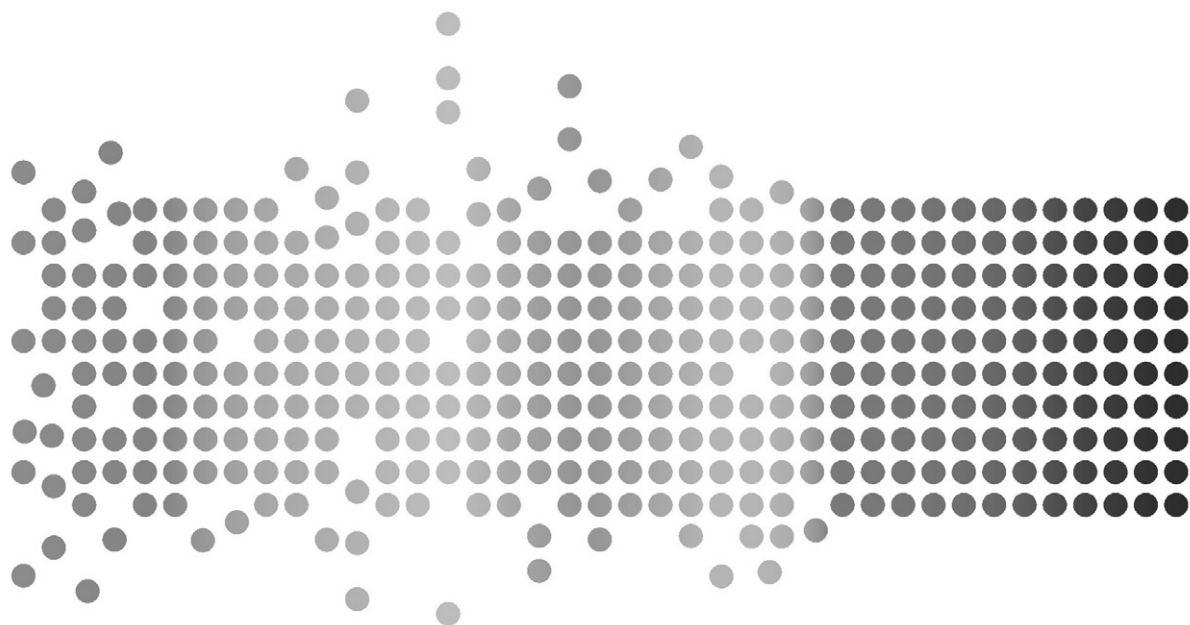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nancing Social Expenditure

최성은



연구보고서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자원조달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최성은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82-8 93330



머리말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복지 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제도의 확충 등으로 2011년 보건복지지출은 84조에 이르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까지 포함하면 120조가 넘는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복지 지출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재정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재원마련 방법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재정의 규모 및 전망과 함께 해외사례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최성은 연구위원이 주관 하에 이기주 연구원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귀중한 조언을 주신 건국대 김원식 교수,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와 본원의 김진수 연구위원, 정영호 연구위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29
제2장 우리나라 사회재원 현황과 전망	35
제3장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의 국제비교	45
제1절 사회보장지출수준의 국제비교	45
제2절 세입구조와 사회보장 재원구조의 국제비교	54
제3절 독일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62
제4절 미국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68
제5절 영국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70
제6절 프랑스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72
제4장 사회보장 재원조달에 관한 논의와 과제	79
제1절 사회보장 재원방안 선택의 고려사항	79
제2절 복지재원조달방안	8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3
참고문헌	109

표 목차

〈표 2- 1〉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사회복지지출(2011년)	37
〈표 2- 2〉 복권기금의 소외계층복지사업 내용	38
〈표 2- 3〉 사회보장 재정지출 전망	39
〈표 3- 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지출과 경제현황(2007)	46
〈표 3- 2〉 공공사회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80년 이후)	47
〈표 3- 3〉 기능별 일반정부 총지출(2009년)	48
〈표 3- 4〉 \$20,000 도달 시점의 사회보장지출과 경제현황	50
〈표 3- 5〉 OECD국가들의 복지지출 재원배분(2007년)	53
〈표 3- 6〉 GDP대비 세입비중(2008년)	57
〈표 3- 7〉 GDP대비 세입비중(2008년)	60
〈표 3- 8〉 OECD 주요 국가의 세율비교	61
〈표 3- 9〉 독일의 조세체계	62
〈표 3-10〉 정부단계별 조세수입	63
〈표 3-11〉 세목별 세수입	64
〈표 3-12〉 공동세 배분비율	66
〈표 3-13〉 독일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66
〈표 3-14〉 독일 사회보장 재원의 부담주체별 추이	67
〈표 3-15〉 미국의 조세체계	69
〈표 3-16〉 미국 총수입과 부문별 수입(1980~2010)	69
〈표 3-17〉 영국의 조세체계 및 세수입구성(2011년 예산)	71
〈표 3-18〉 영국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71
〈표 3-19〉 영국 사회보장 재원의 부담주체별 추이	72
〈표 3-20〉 프랑스의 조세체계	74

〈표 3-21〉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75
〈표 4- 1〉 사회보장지출의 규모와 재원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80
〈표 4- 2〉 사회보장재원 유형과 거버넌스	82
〈표 4- 3〉 재원조달 유형별 특징과 효과	83
〈표 4- 4〉 폐지·축소가 필요한 조세지원	86
〈표 4- 5〉 최고세율 세수효과(2008년 기준)	87
〈표 4- 6〉 주요 면세업종의 특성 및 과세 전환의 세수변화	89
〈표 4- 7〉 담뱃값의 국제비교(2007년 2월)	92
〈표 4- 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 현황	93
〈표 4- 9〉 담배소비세 현황	94
〈표 4-10〉 사행산업매출액	95
〈표 4-11〉 레저세 연간 징수액	97

그림 목차

[그림 2-1] 세목별 세수 실적(2010년)	35
[그림 2-2]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	40
[그림 2-3]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전망	41
[그림 2-4] 국민연금 재정지출 전망	42
[그림 3-1] 국민부담률 및 사회복지지출비율(2007)	51
[그림 3-2] 국민부담률 및 일반정부총지출지출비율(2008)	51
[그림 3-3] 독일 사회보장재원의 유형별, 재원부담의 주체별 배분현황(2009)	67
[그림 3-4] 영국 사회보장재원의 유형별, 재원부담의 주체별 배분현황(2009)	72
[그림 3-5] 프랑스 사회보장재원의 유형별 배분현황(2009)	75
[그림 4-1] 사회보장지출과 부담의 주체	79
[그림 4-2] 사행산업별 매출 및 지출구조	96

An abstract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dark grey circular shape with several smaller, lighter grey circular shapes of varying sizes scattered around it, resembling ink splatters or a molecular structure.

Abstract

Korea has experienced rapid development of social safety net with fast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Past economic crisis played some role on such development. Recently, demographic changes such as aging and low fertility fasten the growth in social expenditure. Social Expenditure in Korea is forecasted to increase from current 7.53% out of GDP to 12% ~15.3%. It implies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al safety net requires increases in total revenue. This paper presents possible ways on financing rapid increases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Examining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presen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s and cons of each financing methods, this paper discusses financing methods. This includes, by source of the revenue, increases in capital gains tax and labor income tax, the introduction of new ear-marked tax, increase in social insurance fees, abolition of various tax expenditures, and modification of individual deduction in income tax code. The first step is, above all, reaching social agreement on the optimal level of social expenditure and tax revenues.

요약

1 우리나라 사회재원 현황과 전망

□ 사회부문 재원구조

-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사회보험기금의 재원은 재산수입 및 각종 기타수입등을 제외한 보험료와 일반조세 세입
 - 건강보험은 보험료수입외에도 건강보험급여의 14%를 일반조세에서 충당하고,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예상 수입의 65%정도를 건강보험가입자지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외에 일반조세에서 관리운영비 및 출산크레딧급여를 지원.
 - 공무원연금은 일반조세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등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환경개선, 교통시설)와 기업특별회계(우편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과학관, 병원, 구립의료원, 경찰병원 등)에서 일부 충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일반조세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군인연금도 일반조세가 군인연금의 수입원
 -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분에 대한 국고보조가 법령화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일반조세에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보험 운영, 모성보호지원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기금도 지원

-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등의 보건복지지출은 일
반조세로 충당
 - － 보건의료지출의 경우 담배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지출이 충당됨.
 - － 한편,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보건복지관련 지출이 이루어짐.
 - － 농지전용부담금을 주세원으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부과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주
세를 재원으로 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금을 중심으로 운
영되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등이 예임.

□ 사회재정지출 전망

- GDP대비 보건복지지출 비율전망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보건복지
지출의 대 GDP 비중이 2010년 8.9% ~ 10.9% 였던 수준에서
2030년에는 약 15.2% ~ 20.6%까지 이르를 것으로 예측됨.
- 건강보험지출:
 - － 2011년 약 38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약
133조 ~ 138.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50년까지 약
293.9조원에서 623.4조원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박형수 외, 2009; 전병목 외, 2010; 박일수 외, 2010;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장기요양보험:
 - － 2009년 약 1조 9천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2030년 경에
는 약 13.5조원 ~ 22.2 조원에,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에서는 48.8조원 ~ 60.8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김용하 외,
2008; 박형수외,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국민연금지출:

- 2011년 약 10조원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2044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경에는 기금의 고갈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 사학연금기금은 202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재정지출은 2030년에는 약 55.6조원에서 86조원에, 2050년에는 약 154조원에서 37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박형수의, 2009; 전병목 외, 2010).

2. 사회보장재정과 자원조달의 국제비교

□ 세입구조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는 소득세수가 GDP대비 3.1%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하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로 낮은 편임.
- 법인세수는 GDP대비 4.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로 높은 편임.
 - 우리나라 법인세의 GDP 탄력성은 1.175(1981 ~2009년)으로 GDP증가율에 대하여 비교적 단위탄력적으로 세수가 증대할 전망
 -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향후에도 경제성장축진과 외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법인세분야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가 주요수단.

- 간접세수는 GDP 대비 8.4%로 북유럽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접세 31%보다 약간 높은 31.6%수준임.
 - － 대부분의 국가(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스위스, 스웨덴, 일본, 독일 등)에서 평균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은 경향
-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수입은 GDP대비 5.8%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임.
 - －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 이들 국가들의 경우 고용주 부담률이 높은 경우가 많음.

□ 독일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 독일은 연방제국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금과 세율을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공동세는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공유하는 형태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음.
 - － 연방정부세금은 통일과 관련되어 법인세와 소득세에 부가되는 통일세, 관세일정분, 맥주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별소비세임.
 - － 주정부의 세금은 재산세, 상속 및 증여세, 자동차세, 경주복권세, 소방세, 맥주세, 부동산취득세.
 - － 자치단체세는 영업세, 재산세, 부동산세, 음료수세, 유흥세, 견세, 수렵어업세, 주점허용세, 제2주택세가 있음.
- 사회보장부문에서의 세입구조는 2009년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의 사회보장재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볼 수 있음.
 - － 정부 총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약 37.6%임을 비교할 때 사회보장기여금의 대부분이 사회보장지출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주가 약 60%를 부담하여, 근로자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조세수입은 사회보장재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국가임.
 - 지방정부가 징세를 하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기여금으로 운영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유산 및 증여세, 연방정부 소비세 및 관세, 실업세, 사회보장세가 연방정부의 세목임.
 - 주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일반판매세, 개별판매세, 유류세, 담배세, 주세등을 부과함.
 -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담배세, 주세와 등록세, 호텔숙박, 경마, 공공서비스, 보험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함.
- 미국 정부 총세입은 GDP의 26.1%(2007년기준, OECD revenue statistics)으로, 직접세는 GDP의 11.8%(총세입 대비 45.2%), 간접세는 GDP의 4.6%(총세입 대비 17.6%)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은 GDP의 6.5%(총세입 대비 25.1%)임.
 - 미국은 정부의 GDP 대비 총수입이 낮은 나라중이 하나로, 조세수입에서는 간접세(30%)에 비해서 직접세의 비중이 70%로 매우 높은 편임.

□ 영국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 영국은 세목의 대부분이 국세이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목이 중앙정부의 세금임.
 - 지방정부는 중앙으로부터의 교부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에는 사업세, 카운슬세(Council tax)등의 지방세가 있을 뿐임.
 -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011년)정도 일 뿐임.
- (2007년 기준 정부 총세입은 GDP의 35.7%이고, 직접세는 GDP의 14.3%(총세입 대비 40%), 간접세는 GDP의 10.3%(총세입 대비 28.8%), 사회보장기여금은 GDP의 6.8%(총세입 대비 19%)임.
 - 조세수입 중에서는 간접세(40%)에 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60%로 높은 편임.

□ 프랑스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 프랑스는 재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이 국세이며, 지방세는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나대지세, 부동산세등 재산세와 등록세 관련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세목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유세, 사업소세, 예술가부담금, 석유류세, 주류, 담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보험특별세, 수입세, 사치성 오락세, 보석 및 고가의 그림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등이 있음.
 - 주류에는 소비세 및 국가의료보험 분담금, 유통세가 부가되며, 맥주, 물 및 비알콜성 음료에도 음료세가 부과됨.
- 프랑스의 정부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전체 세입의

83%를, 주정부는 18%를 차지하고 있음.

— 직접세는 전체 세입의 24.1%, 간접세는 24.5%, 사회보장기여금은 전체 세입의 37.2%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사회보장세(CSG,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가 부과되고 있는데, 프랑스는 GDP의 45%정도나 되는 세금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사회보장비는 만성적이 적자상태에 시달렸음.

— CSG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과 가족급여 및 공공부조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 그리고 자산소득에 부과됨.

○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은 사회보장기여금 65%, 조세수입 30%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재원으로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는데, 이중 고용주의 부담은 약 68%로 근로자의 부담보다 높음.

3. 사회보장 재원조달에 관한 논의와 과제

□ 복지재원조달방안 선택시 고려사항

○ 사회보장지출의 대상자 그룹과 규모를 결정

○ 사회보장 규모와 재원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인구학적 요인

— 경제적 요인

— 거버넌스 요인

○ 재원조달 시기 결정

○ 재원조달 방식의 기본적 목적: 미래 비용의 현재가치와 초기비용

의 합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현재가치와 동일하여야 함

-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부과 대상, 세원 선택, 조세, 사회보험료, 목적세등의 방안 선택 및 금액에 대한 재원조달원칙 결정
- 재원조달의 제반 원칙
 - 재원적 견고성의 원칙 (financial solidarity rule): 납세자의 능력에 준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
 - 집합적 재원동질성의 원칙(the rule of collective financial equivalence): 사회보험에서 개인, 코호트별 동질성의 원칙과 같음.
 - 이는 첫째, 재원적으로 비용의 현재가치가 향후 혜택의 현재가치와 같아야 하며,
 - 둘째, 이러한 장기적 재정균형 상태가 허용되지만 한다면 그 동안 소득의 재분배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 셋째,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은 그렇지 않은 용도의 지출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
 - 세대간 형평성의 원칙
- 보험계리적 균형과 재원 수준

□ 복지재원조달 방안

- 복지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출측면에서의 조정과 세입확충, 국채발행, 사회보험료 인상, 민간부문의 활용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세출측면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고, 국채발행도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관리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원적인 세입확충 방안이 필요
- 세출측면의 조정은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등으로 세입확충에 앞서서 재원조달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조세체제의 구조조정,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세율인상, 세원확대 및 세제신설등의 세제개편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함.
- 세입확충시에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하에 재원확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세입부문에서는 소득재분배적인 기능보다는 세수확충과 경제적 영향부문에 포커스를 맞추고, 소득재분배적인 기능은 지출측면에서 심분 발휘하는 시스템이 효과적.
- 세수확충을 위한 재원방안의 선택시 추가적 재원의 부담주체가 노동임금자, 자산소득자, 고용주, 법인, 특정소비자등 어느 계층이 되어야 하는지 고려하여야 함.
- 재원조달 책임주체도 중앙정부가 되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고려하여야함.

(1)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 2009년도 총 조세감면액 규모는 28조 6천억원으로 추정됨.
- 임시투자세액공제(1조 9,188억원, 2009년)는 불황기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었으나 상시화 된 것으로 정비 필요성 있음.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85억원, 2009),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35억원, 2009), 주식 현물출자 및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245억원, 2009),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21억원, 2009),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9억원, 2009)등도 지원의 명분이 빈약하므로 정비 필요성 있음.

(2) 소득세

- 우리나라의 소득세수의 GDP탄력성은 1.3(2000~2009년) 정도로, GDP 증가율 이상으로 세입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관계로 최고과표구간 신설 없이도 세수확보 여건은 좋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과표구간 조정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GDP 상승에 따른 세수가 증대할 여지가 많음.
 - 소득세 최고세율 2%p 인하를 유예하고 과세표준 1.5억원 이상 구간에 대한 40% 세율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약 1조 4천억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됨(안종석 외, 2010; 국회예산정책처, 2010)
- 소득세부문에서는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현실화등 과표 양성화 노력을 통하여 넓은 세원에 의한 재원확충이 필요
 - 음성탈루소득의 적발을 통한 세원확대 및 세입증대.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노출시키는 방안 적극 추진
- 소득세의 역진성을 강화하는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여 세수 감소 방지가 필요

(3) 자본소득세

-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 미등록 주식에 대한 과세와 법인이 보유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고 있음.
 -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배려라고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대신 거래세가 부과되어 왔음.

- 그러나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현 시점에서는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이도 주식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성숙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비과세혜택의 필요성이 약해짐.
-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개인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종합과세하는 경우도 많음.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과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의 경우도 거래세부과 체제에서 점진적으로 소득세부과로 전환하여 성공한 케이스로 꼽힘.
- 우리나라도 거래세 부과체제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제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투기적인 주식투자 방지의 필요성이 있음.
- 2009년도 시가총액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대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분리과세하고 이자소득세율인 14%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적 세수입은 약 19조원으로 추정됨 (홍범교 외, 2010). 2009년의 증권거래세수 3조 5,339억원에 비하여 약 15.5조원이 높음.

○ 파생금융상품 과세

- 1996년 최초로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육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선물 및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시장도 세계적인 거래량을 기록

할 만큼 성장한 시점이며, 현물시장과 연계한 투자전략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필요성 증가.

-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선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부터 신설하는 방안을 통하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서는 선물은 약정금액을, 옵션은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세율 0.01% 및 탄력세율 0%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주요 선진국의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10년 약 18.1%이며, 캐나다(7%)와 일본(5%)만이 우리나라 세율보다 낮음.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문제는 세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강화로 상쇄한다는 것이 높은 부가가치세율 부가의 논리이며, 서민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율은 낮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비중이 주요국가들에 비해 큰 상황이며,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앞서 현행 부가가치세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기반을 넓혀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선행됨.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과도한 면세 적용은 이후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안종석 외(2010)에서는 금융보험, 의료보전,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5) 탄소세의 신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의 일종으로 에너지사용에 관한 탄소세를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경제적비용을 내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에너지부문과 전력부문을 합하여 연간 약 20조 4,928억원(200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 2008년~2012년 유럽시장의 평균 탄소배출권 가격을 톤당 25유로인 것으로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탄소세의 예상세수는 GDP의 약 1%로 추정(김승래 외, 2009)
- 유럽국가들의 경우 신규 환경세의 도입 시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등을 인하 하는 등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서 환경세로 세 부담이 이동됨.
 - 덴마크의 경우 천연가스 및 아황산가스에 대한 신규과세와 더불어 사회보장기여금의 축소 등이 있었고,
 - 독일도 에너지세 부과 후 고용주와 종업원연금 부담금의 1.7% 정도가 감소(2003년)하였으며,
 - 네덜란드도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과세와 함께 증가한 세수로 인하여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이 0.19% 감소됨(1996년).
 - 영국도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후 세수는 고용주국민보험기여금을 0.3% 줄이는데 사용(2001년)

- 유류세, 교통세, 환경부담금 등의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의 탄소세를 신설 후, 점진적인 에너지세제의 개편 추진과 동시에 추가적 자원과 사회보험료나 복지재원으로 연계가능.

(6) 담배, 청량음료, 도박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강화

- 담배에 대한 과세강화
 - 흡연은 비정상재(demerit good)로서, 흡연율을 저감하기 위하여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
 -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
 -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조 8,358억원(2001년)으로 추정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해외국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율도 62%로, OECD평균(70.3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이에 지방교육세등이 부가되는 구조임.
 -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되어 마련된 재원은 부가세 41원, 유통마진 50원을 제외한 409원을 건강증진기금과 지방세에 50:50으로 배분함.
 - 건강증진기금에 204원, 담배소비세에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연엽초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을 배분하였음.
 - 향후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된다고 할 때, 2004년 담배가격 인상시의 재원배분과 같은 비율로 추가재원을 배분한다면,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5,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이영외, 2007).

-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등 지방세에서의 총 세수도 총 5,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 부가가치세 1105억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되어 총 세수증가액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예상됨.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복권등 사행산업 관련세 강화

- 2009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매출은 증가하여 2010년 총매출액은 16조 6천억원에 달함.

- 1997년 4조원이던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4배나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

- 사행산업은 중독성이 있어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를 추구하다가도 이후에는 자신의 소비를 후회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를 통하여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마, 경정, 경륜등에는 마권매출과 관련하여 레저세가 10% 부과되고 이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가되며, 경마 및 경정경륜장 입장권 매출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각각 1인당 500원 및 200원 부과되고 이에 대하여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형태임.

- 카지노에 대하여는 장소별 개별소비세 50,000이 부과되면, 폐광지역 내국인은 3,500원 외국인은 면세임.

- 경마의 수익금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일부 쓰

이며, 경륜, 경정의 수익금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방재정지원에 일부 쓰임.

-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이내에서 폐광지역개발 기금으로 가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0%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임.

- 스포츠토도의 경우 수익금의 일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됨.

- 복권의 경우 수익금의 30%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등 법정배분사업의 수입원이 되고, 70%가 국민주택기금등 공익사업의 재원이 되고 있음.

- 레저세는 현재 지방세로서, 경마, 경륜, 경정을 통틀어 2008년 기준 약 9천 890억원의 규모이며, 60%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연간 레저세 징수액을 살펴보면, 2002년 1조 770억원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 8천 643억원, 2008년 9천 89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레저세를 국세화하여 국고로 환수한 후 복지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고려

- 줄어든 지방재정의 문제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청량음료, 패스트 푸드등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과세

- 우리나라도 최근 서구사회처럼 아동 및 청소년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만과 관련된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8천억원(2005년 기준, 건강보험연구원,2010)으로 추정
- 청량음료나 패스트푸드등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과세를 통해 비만율과 관련 질환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의 필요성이 있고,
 - 건강위해식품의 외부성 교정(소비자들의 비만관련 질병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건강위해식품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음)을 위해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19개 주에서 청량음료, 스낵, 사탕, 시럽등의 식품에 과세하고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 증가세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나, 워싱턴 주등 5개주에서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됨.
 - 주로 관련 업체들의 반발, 로비등으로 인하여, 12개의 주에서 일부 식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기도 하였음.
- 비만등을 초래하는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과세는 영양학적인 관점에서의 식품분류나 청량음료의 성분에 따른 정의등에 의거하여 해당식품에 부과할 수 있음.

(7) 사회보장세의 신설

- 복지지출과 세입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사회보장세(가칭)라는 목적세를 신설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를 저부담 저복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로의 체제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적인 사회보장세의 형태로 국민적 합의 도출 가능.
- 외부 불경제 시정등 명분이 있는 적정 세목에 목적세인 사회보장

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연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이때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 능력보다는 국민적 정서와 정치 지형이 문제가 될 여지가 큼.

○ 사회보장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를 국채로 재원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등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하였음.

○ 프랑스의 사회보장세(CSG)

— 프랑스는 GDP의 45%정도나 되는 세금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사회보장비는 만성적이 적자상태에 시달렸음.

— 사회보장세는 1991년 사회보장비의 재원으로 도입되어 사회보장지출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CSG는 보건, 가족 및 노령연금기금에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사회보장기여금과는 달리 사회보장급여와 직접적 연계가 없음.

— CSG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과 가족급여 및 공공부조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 그리고 자산소득에 부과.

— 1993년의 경우 근로소득의 87%가 CSG의 부과대상이 된 반면 사회보장급여의 47%, 자산소득의 44%만이 CSG부과 대상이 됨.

— 1997년에는 CSG가 면제되었던 자산소득도 대거 부과대상으로 편입됨.

— CSG가 도입되던 1991년 CSG의 세율은 1.1%였으나 동시에 노령연금 기여금은 1.05%가 인하됨.

— 1993년에는 CSG 세율이 2.4%로 인상되었고, 1997년에는

3.4%로 인상되었으나 동시에 건강보험 기여금이 1% 인하.

- 1998년에는 7.5%로 인상되었고 동시에 건강보험 기여금은 4.75% 인하. 복지급여에 대한 세율은 6.2%, 3.8%, 0%로 차등화 됨.
- CSG 세수는 1.1%가 가족급여기금인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CNAF)에 할당되며, 1.3%가 노령연금기금인 Fonds de Solidarite Vieillesse(FSV)기금에 할당되며, 5.1%가 건강기금인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CNAM) 기금에 할당됨.
- 1999년 CSG는 중앙정부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소득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CSG가 단일세율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자산에 폭넓게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누진적인 소득세 못지 않게 소득재분배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도박성이 강한 사행산업, 흡연, 알콜중독등의 억제를 위해 외부 불경제품목에 우선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고, 소득세도 세원으로 활용

- 사행산업, 담배세, 레저세, 주세등의 재원을 일괄적으로 국고로 환원한 후 재원배분을 한다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함.
 - 현행의 사행산업, 담배, 주류등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부가세(surtax)가 부가되어 있는 형태로,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하고, 과세 강화 이후에도 이들 재원을 복지재원이나 기타 재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움.
 - 장기적으로는 부가세 구조를 단순화 함과 동시에 현행의 지방교육세와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의 개선과,

- 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보험 재정운용방식의 개선도 필요함.
- 반면, 이러한 국고흡수후 재배분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 등에 어려움을 줄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사회보장세를 부가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음.
- 이는 상위 5%의 고소득자와 상위 1%의 대기업을 상대로 부가하여 매년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복지재원으로만 충당한다는 골지임.
- 그러나 누진세 형식으로 상류층에만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크지 않음.

(8) 사회보험방식의 활용

○ 사회보험료 인상

- 노인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체제의 개선등 노후 건강관리에 관한 재정지출을 건강보험료에 가산할 수 있음.
- 출산 및 양육지원관련 재정지출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가산할 수 있음.
- 현행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 국민연금 기금을 출산장려대책에 활용하여 출산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래의 생산인구 증가로 연금 보험료 수입의 증가와 조세기반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음.
- 연금기금으로 노후대책, 특히 노인요양시설등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면 은퇴후 연금소득 이외에도 현물서비스가 충실히 지

원되므로 노후 생활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노후 빈곤으로 인한 추가적 사회부담이 줄어들게 됨.

- 사회보험신설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보험을 신설하여 출산 및 출산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의 재원마련.
- 스웨덴의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은 출산후 휴가기간 및 육아 기간중 아동의 질병이나 보호자의 질병에 의한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의 80%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금으로 충당함.
- 사회보험신설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연대형성에 도움이 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음.
- 부처별, 제도별로 분산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함.

4. 결어

- 한국적 복지모형 정립과 적정 복지지출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 산업화와 복지국가의 역사가 100년 이상인 복지선진국들에 비하여, 후발산업국가로서 급속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이루어 왔으며, 균형재정의 기조하에 비교적 건전한 국가재정관리가 이루어져 왔음.
 - 복지선진국가들의 경험을 보아도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와 복지국가 구축으로 누리는 과정에서, 경제위기시 성장을 위한 복지지출의 감축등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복지국가로서의 성패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사이클에 달려있

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사이클을 작동시킬 수 있는 복지지출 강화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투자방향 모색이 선행되어야 함
 - － 노동과 복지의 연계, 일자리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투자 강화등
 - － 복지 포폴리즘적 요소를 배제한 복지수요의 반영에 따른 재정 투자방향 모색

□ 재원확충과 관련하여서는 단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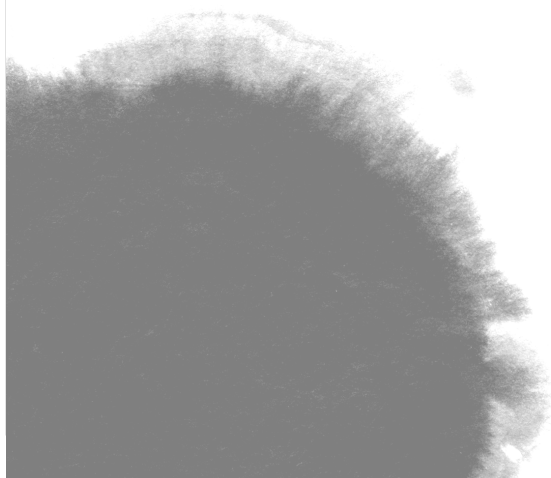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전달체계의 개선, 부처간 역할의 조정등을 통한 지출의 효율화와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 노력의 선행
-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및 축소를 통한 재원확충이 필요
-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행 조세구조의 개편, 사회보장세의 신설,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고용주 기여를 통한 신규재원확보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는 목적세와 부담금등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과 지방세와 국세 항목의 구조조정 등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의 가능성 타진.
 - － 담배, 주류, 경마, 복권등의 대표적 외부불경제 품목들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담금, 지방세, 목적세의 형태로 하나의 세원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세금들이 부가되고 있고, 주로 특별회계나 기금등의 재원이 되거나 지방세로 활용되고 있어, 목적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그다지 투명하지 않고,

세수의 활용측면에서 경직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부처간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에 대하여서는 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금 등의 재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기금, 특별회계 등의 재원과 목적세 부담금 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 도모와 추가적 재원확보가 필요함.

01

서론





제1장 서론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건강보험지출을 포함하여 2011년 기준 약 122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지출을 포함한 정부총지출의 약 36%에 이르는 규모로, 정부 재정지출 중 가장 큰 항목이다.¹⁾ 우리나라 복지지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지출이 약 31%, 공적연금지출이 2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각각 5%와 4%로, 4대 사회보험지출이 전체 복지지출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지출 및 취약계층지원 등 공공부조지출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일자리관련 지출은 전체 복지지출의 약 13%이다. 보육 및 가족관련 지출은 최근에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복지지출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 의료부문 지출은 전체 복지지출의 1%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비교적 단시간내에 이룬 사회보험의 확대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1998년의 IMF경제위기를 거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고용안정화, 실업급여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지출이 확대되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국면에 접

1) 기획재정부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복지지출은 보건, 복지, 보훈, 노동, 주택, 연금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복지지출은 주택과 관련한 모든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복지지출이라고 볼 수 없는 주택조사관련 지출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적 연금지출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지출만 포함하고, 기타 특수직연금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지출이 국가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부의 복지지출에는 국고 보조금만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획재정부의 기능별 복지지출은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와는 다르다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복지지출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조사관련 주택부문의 지출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이외의 특수직연금 지출과 국가통계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지출을 포함하여 복지지출 규모를 파악하였다.

어 들면서 보 육 관련 지출의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등의 도입으로 인해 복지지출의 증가가 가속화되었다. 급속한 고령화속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민의료비 증가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복지 지출이 향후에도 급속히 증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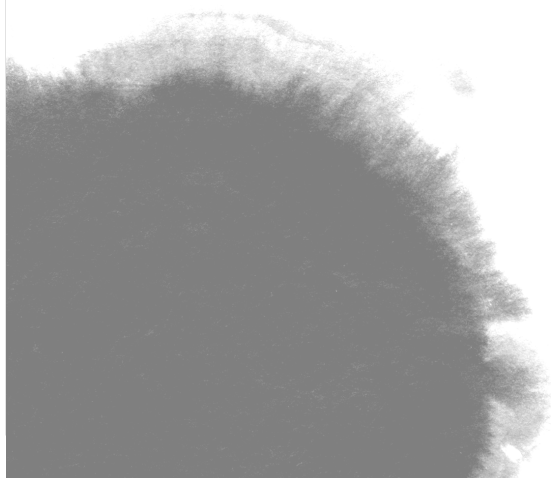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이는 건강보험지출 및 연금지출의 확대등 사회보험지출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료의 증가와 이에 대한 국고지원의 증가 필요성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령화되어 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의 14% 국고지원과,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재정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이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적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법령화되어 있지 않다. 향후 사학연금기금은 202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도 매5년마다의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고갈 시기를 전망하고 있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보험료인상 필요성이 예측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도 급속한 급여지출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인상의 필요성과 국고지원 증가 필요성이 예측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등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지출의 인상은 향후 보험료율의 인상을 수반하게 될 것이지만, 이에 따르는 일반조세 재원의 인상도 포괄하게 된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부담률 증가 압박요인과 더불어, 국고부담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지출은 보육과 가족, 사회서비스분야라 할 수 있다. 포괄 리즘적인 복지확대 논쟁,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확대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선거 및 집권주기와 더불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의 공공성확대에 대한 논의는 많은 경우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중산층까지로의 보육료 전액지원대상확대 및 만5세 무상보육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논의도 이루어 지고 있어, 향후 보육 과 가족부문에서의 국고부담 필요성도 증폭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자원조달방안에 관한 소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우리나라 복지재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제 3장은 복지재정과 자원조달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4장은 복지자원조달에 관한 논의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 5장은 결론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02

우리나라 사회자원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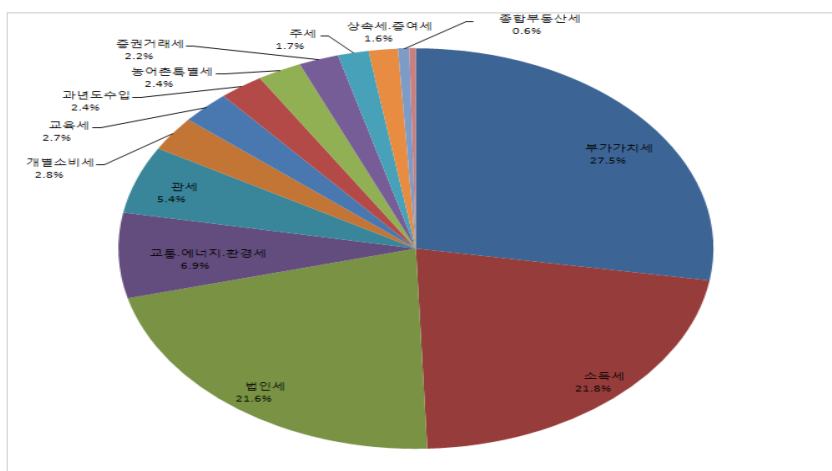




제2장 우리나라 사회재원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의 총세입은 2009년 기준 약 290조원으로 GDP의 약 27.2%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수입은 총 194.8조원(67.1%)로 국세수입은 약 170.5조원(58.7%), 세외수입은 약 24.3조원(8.3%)이다. 기금수입은 총 96.0조원(32.9%)로 이 중 연금보험료등 기타 보험료가 35.6조원(12.2%)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전체 세입의 21.6%, 부가가치세가 27.5%, 법인세가 21.6%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원이 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약 6.9%이며, 교육세는 약 2.7%, 주세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1] 세목별 세수 실적(2010년)



자료 :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www.dbrain.com)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사회보험기금의 재원은 재산수입 및 각종 기타수입등을 제외한 보험료와 일반조세 세입이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수입 외에도 건강보험급여의 14%를 일반조세에서 충당하고,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의 65%정도를 건강보험가입자지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외에 일반조세에서 관리운영비 및 출산크레딧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일반조세에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등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환경개선, 교통시설)와 기업특별회계(우편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과학관, 병원,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등)에서 일부 충당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일반조세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군인연금도 일반조세가 군인연금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분에 대한 국고보조가 법령화되어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일반조세에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보험운영, 모성보호지원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기금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등의 보건복지지출은 일반조세로 충당되고 있다. 보건의료지출의 경우 담배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지출이 충당되고 있다. 한편,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보건복지관련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주세원으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부과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수입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등이 있다.

〈표 2-1〉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사회복지지출(2011년)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사업	금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8,121
취약계층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00
노인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0
노동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907
보건의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등	65,31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8,452
취약계층	장애인차량 LPG 지원	0
노동	산업재해예방	54,272
보훈	국가유공자LPG차량지원	34,18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478
노동	노동부혁신도시 종합상담센터이전	3,47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4,265
노인	노인일자리지원	1,944
청소년	청소년시설확충	49,417
노동	직업능력개발, 노사정책	6,892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0
보훈	보훈청운영비	1,286
식약청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4,726
책임기관특별회계		102,121
보건의료	국립재활원, 국립병원 운영비	102,121

청소년관련 지출은 50%이상이 기금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복권판매수익으로 이루어진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법정부담금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분지출중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부담금 및 일반조세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전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일부 취약계층지원사업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재원이 되고 있다.

〈표 2-2〉 복권기금의 소외계층복지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유형별	사 업 명	관리주체	10계획 (A)	11계획 (B)	증감 (B-A)
공익 사업	서민 주거 안정	소 계	471,936	481,375	9,439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국토해양부	374,850	-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해양부	80,826	9,439
		쪽방 등 주거지원	국토해양부	16,260	-
	소외 계층 복지	소 계	153,394	290,074	136,680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노동부	8,000	-
		출소자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운영	법무부	2,750	△1,340
		소외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법무부	2,120	△1,406
		금융소외자신용회복 법률지원	법무부	2,800	-
		여성발전기금 전출 소계		104,560	22,164
		• 가장 성폭력 재발방지	여성가족부	6,289	△3,387
		• 한부모가정양육 · 교육비지원	여성가족부	55,934	9,534
		•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가족부	42,337	16,017
		아동 · 청소년치료재활전문센터건립	여성가족부	2,964	1,354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지식경제부	29,200	△9,750
		취약계층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	공정거래 위원회	1,000	△400
		서민금융활성화지원	중소기업청	-	120,000
		저소득장애인 맞춤형창업 인큐베이터 구축	중소기업청	-	3,00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지원	보건복지부	-	2,458
		교정기관시설 관리인고용	법무부	-	600
	보훈 복지	소 계	17,649	16,471	△1,178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서비스 개선	국가보훈처	17,649	△1,178
법정 사업		지방자치단체지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 건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차녀 지원 사업)	지방자치 단체	40,266	22,096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제주도	43,266	19,096
		근로자복지진흥기금전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복지 공단	13,305	5,87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의료서비스 선진화 지원 등)	보훈복지 의료공단	16,108	7,1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아동청소년아간보호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10,739	4,740

자료: 2011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부문 지출은 법정지출이 약 89%로, 수혜대상의 확장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없이 현 상태의 제도하에서도 향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출산등 인구구조적 변화는 노인의료비와 노후소득보장비 증가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 지출은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부문이다. GDP대비 보건복지지출 비율전망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보건복지지출의 대 GDP 비중이 2010년 8.9% ~ 10.9% 였던 수준에서 2030년에는 약 15.2% ~ 20.6%까지 이르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2-3〉 사회보장 재정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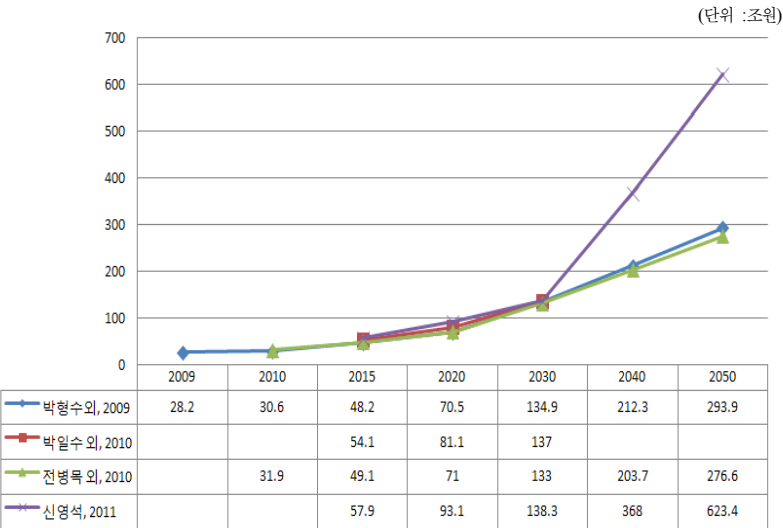
(단위 : GDP 대비 비율)

		2009	2010	2015	2020	2030
I ¹⁾			10.1	11.3	12.9	17.5
II ²⁾	최저	8.6	8.9	10.2	12.0	17.0
	최대	8.8	9.1	10.6	13.2	20.1
모형III ³⁾		9.5	9.8	10.6	12.0	15.2
모형IV ⁴⁾			10.9		15.3	20.6

주: 1) 모형 I KDI, 2005.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2) 모형 II 한국조세연구원, 2004. 복지재정지출 연건변화와 전망
 3) 모형 III 박형수 외, 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4) 모형 IV 비전 2030

건강보험지출은 2011년 약 38조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약 133조 ~ 138.3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형수 외, 2009; 전병목 외, 2010; 박일수 외,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연구들 마다 전망치의 변이가 좀 큰 편인데, 약 293.9조원에서 623.4조원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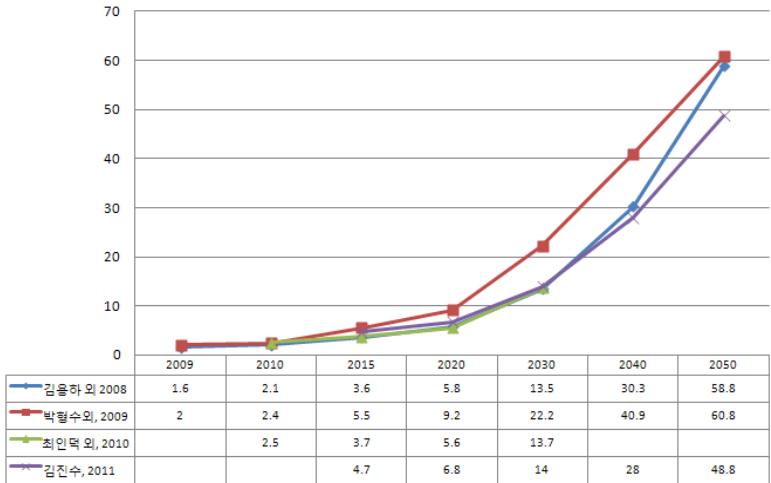
[그림 2-2]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



자료: 박형수 외, 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일수 외, 201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전병목 외, 2010.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신영석, 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장기요양보험은 2009년 약 1조 9천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연구들에 의하면 2030년 경에는 약 13.5조원 ~ 22.2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용하 외, 2008; 박형수외,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48.8조원 ~ 60.8조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재 대상자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기에, 향후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더 급속하게 늘어날 여지가 있다. 현재는 65세이상 인구의 5.1%만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이다.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10%까지 포함하게 되면, 추가소요 예산은 국비지원분만 약 4,200억가량 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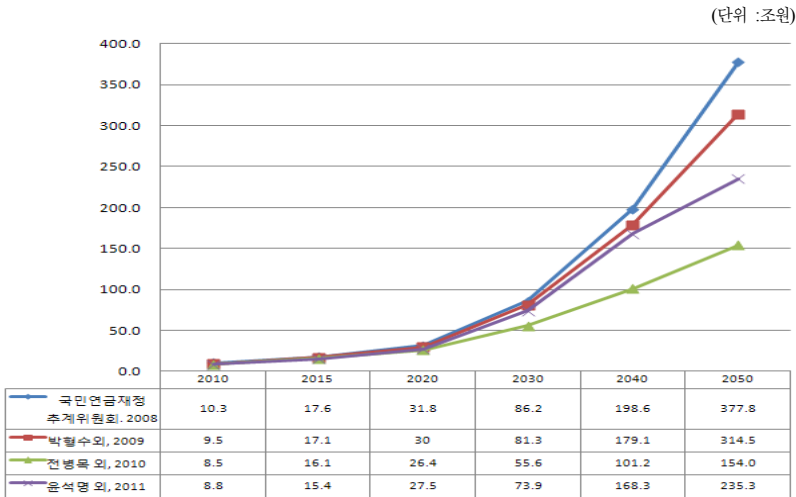
[그림 2-3]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전망



자료: 김용하 외,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형수 외, 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최인덕 외,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전망
 김진수, 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국민연금지출은 연금급여의 본격화로 인해 최근들어 지출 증가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건강보험지출과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문 예산의 높은 증가율이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2011년 약 10조 원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2044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경에는 기금의 고갈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지출 전망에 관한 연구들은 국민연금 지출이 2030년에는 약 55.6조원에서 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50년에는 약 154조원에서 38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박형수외, 2009; 전병목 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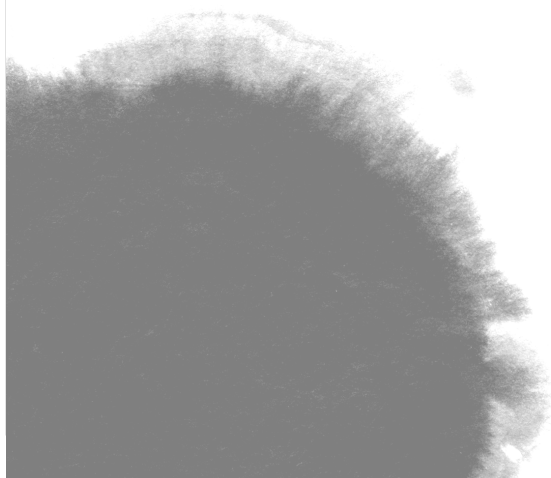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그림 2-4] 국민연금 재정지출 전망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재정추계
 박형수 외, 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전병목 외, 2010.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윤석영 외, 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03

사회보장재정과 자원조달의 국제비교



제3장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의 국제비교

제1 절 사회보장지출수준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social expenditure)은 2007년 기준으로 GDP의 약 7.5%로, 규모면에서는 OECD국가 평균 19.3%의 약 38% 수준에 지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비교는 적정 사회보장지출수준에 대한 적절하고도 타당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각 국가가 처한 사회문화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 복지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너무나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연금성숙도, 인구고령화율 및 국민소득, 국민부담률 수준, 정부의 규모등에 따라 복지지출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오히려 수치상 비교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사회, 문화, 이념적 요인들은 비교가 더 힘들어진다. 하지만 사회, 문화, 이념적 요인들에 따라서도 적정 복지지출 수준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문화적요인에 따라 집단간의 복지인식 및 재분배성향이 현저히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Luttmer et al, 2010; Benabu et al, 2006).

〈표 3-1〉 OECD 국가의 사회보장지출과 경제현황(2007)

(단위 : \$, %)

국가	공공사회 복지지출	국민 부담률	1인당 GDP	재정 수지	여성 고용률	실업률	일반 정부지출	노인인구 비율
프랑스	28.4	43.2	32,495	-2.7	59.4	8.3	52.6	16.5
스웨덴	27.3	46.3	36,785	3.8	73.2	6.1	51	17.4
오스트리아	26.4	42.7	36,839	-0.7	64.4	4.4	49	17
벨기에	26.3	44.2	34,665	-0.2	54.9	7.5	48.4	17.1
덴마크	26.1	48.2	36,326	4.5	73.3	3.8	50.8	15.5
독일	25.2	37	34,683	0.2	63.2	8.4	43.6	19.9
핀란드	24.9	43.1	35,346	5.2	68.5	6.9	47.2	16.5
이탈리아	24.9	43.3	30,990	-1.5	46.6	6.1	47.9	20
헝가리	23.1	40.2	18,763	-5	50.9	7.4	50	16.1
포르투갈	22.5	35.3	22,638	-2.7	61.9	8.1	44.4	17.3
스페인	21.6	33.3	31,469	1.9	55.5	8.3	39.2	16.6
그리스	21.3	32.6	27,793	-4	48.1	8.3	46.6	18.6
노르웨이	20.8	42.6	53,802	17.7	74	2.6	41.1	14.6
룩셈부르크	20.6	35.6	82,456	3.7	54.5	4.2	36.2	14
영국	20.5	35.7	34,957	-2.7	66.3	5.3	44	16
네덜란드	20.1	39.1	39,594	0.2	68.5	3.2	45.3	14.6
폴란드	20	34.3	16,312	-1.9	50.6	9.6	42.2	13.4
OECD 평균	19.3	35.4	33,077	-1.3	57.5	5.7	41.2	14.2
체코	18.8	36	23,995	-0.7	57.3	5.3	42.5	14.5
일본	18.7	28.2	33,635	-2.5	59.5	3.9	35.9	21.5
스위스	18.5	29.1	41,800	1.6	71.6	3.6	32.3	16.3
뉴질랜드	18.4	33.7	27,020	5	69	3.7	38.8	12.5
캐나다	16.9	32.3	38,448	1.6	70.1	6	39.4	13.4
아일랜드	16.3	28.8	44,381	0.2	60.3	4.6	36.7	10.8
미국	16.2	26.1	46,434	-2.8	65.9	4.6	36.8	12.6
호주	16	27.1	37,616	1.8	66.1	4.4	33.4	13.2
슬로바키아	15.7	29.3	20,270	-1.9	53	11.2	34.3	11.9
아이슬란드	14.6	36.8	36,325	5.4	81.7	2.3	42.3	11.5
터키	10.5	24.2	13,362	-	22.8	8.6	34.5	6
한국	7.5	26.5	26,574	4.7	53.2	3.2	28.7	9.9
멕시코	7.2	21	14,128	-	43.6	3.7	20.5	5.5

주: 재정수지, 일반정부지출, 국민부담률,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비율임.

자료: OECD Stats. National Accounts,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Taxation and Market Regulation

낮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속도는 OECD국가들에 비하여 무척 급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약 0.52%에 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5.93%에 달하고 있다. 정부주도하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단기간내에 이루

어낸 후발산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재정투자는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왔다는 점에서 1900년대 초반에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혜택과 그늘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경우와는 상이할 수 있다.

〈표 3-2〉 공공사회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80년 이후)

	90년이후 연평균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한국	5.93%	..	8.95%	6.64%
멕시코	4.78%	..	5.50%	4.49%
터키	3.67%	4.37%	6.21%	..
포르투갈	3.52%	0.88%	3.91%	2.56%
일본	3.02%	0.75%	4.05%	1.78%
스위스	1.90%	0.70%	3.63%	0.53%
폴란드	1.74%	..	4.33%	-0.52%
그리스	1.53%	4.69%	1.69%	1.55%
이탈리아	1.30%	1.85%	1.75%	0.94%
영국	1.21%	0.26%	1.14%	1.43%
호주	1.18%	1.38%	2.56%	-1.11%
미국	1.10%	-0.06%	0.83%	1.64%
체코	0.94%	..	2.18%	-0.74%
독일	0.86%	-0.10%	2.29%	-0.77%
프랑스	0.78%	1.99%	1.66%	0.35%
오스트리아	0.63%	..	1.45%	-0.16%
아일랜드	0.52%	0.75%	-0.65%	2.99%
OECD 평균	0.52%	1.12%	0.98%	0.27%
스페인	0.46%	1.67%	0.26%	0.78%
룩셈부르크	0.45%	-0.95%	0.71%	0.61%
아이슬란드	0.36%	..	1.24%	-0.63%
벨기에	0.34%	0.50%	0.45%	0.52%
칠레	0.23%	..	2.82%	-3.11%
덴마크	0.22%	0.24%	0.56%	0.23%
핀란드	0.15%	2.56%	0.68%	0.34%
노르웨이	-0.41%	2.94%	0.63%	-0.34%
캐나다	-0.42%	2.29%	-0.87%	0.31%
스웨덴	-0.60%	0.86%	-0.22%	-0.58%
뉴질랜드	-0.92%	2.42%	-1.16%	-0.57%
네덜란드	-1.41%	-0.36%	-2.42%	0.21%

자료: OECD Stats.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한편, 우리나라는 분단상황하에서 국방부문에의 재정지출 확보 필요라는 특수한 여건하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국가들의 일반정부지출의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여건상의 차이가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비 비중이 8.9%로 이스라엘,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경제지출 비중은 21.8%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지출은 약 25.4%로 OECD평균 48.2%의 약 53%수준이다. 이로 미루어 보전대 국민소득수준에 비하여 정부의 총지출 규모 자체가 OECD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중도 상대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표 3-3〉 기능별 일반정부 총지출(2009년)

(GDP대비 비율임, ()은구성비)

	일반	국방	치안	경제	환경 보호	주택	보건	문화 및 지역	교육	사회 보호	일반정부 총지출
덴마크	7.5 (12.9)	1.5 (2.5)	1.2 (2.0)	3.1 (5.3)	0.5 (0.9)	0.6 (1.0)	8.8 (15.1)	1.7 (3.0)	8.0 (13.7)	25.4 (43.5)	58.4 (100.0)
프랑스	7.2 (12.8)	1.9 (3.3)	1.3 (2.4)	3.1 (5.5)	0.9 (1.6)	2.1 (3.7)	8.4 (14.8)	1.7 (3.0)	6.2 (11.0)	23.7 (42.0)	56.5 (100.0)
핀란드	7.4 (13.2)	1.7 (3.0)	1.5 (2.7)	5.1 (9.0)	0.4 (0.6)	0.5 (0.9)	8.0 (14.2)	1.2 (2.2)	6.6 (11.8)	23.9 (42.5)	56.3 (100.0)
스웨덴	7.5 (13.6)	1.5 (2.7)	1.4 (2.6)	4.7 (8.5)	0.4 (0.6)	0.8 (1.4)	7.4 (13.5)	1.2 (2.2)	7.3 (13.2)	23.0 (41.6)	55.2 (100.0)
벨기에	9.2 (17.0)	1.1 (1.9)	1.9 (3.4)	5.9 (11.0)	0.6 (1.2)	0.3 (0.6)	8.0 (14.8)	1.3 (2.4)	6.3 (11.7)	19.5 (36.0)	54.2 (100.0)
그리스	10.7 (20.1)	3.6 (6.7)	1.9 (3.6)	5.3 (9.9)	0.7 (1.2)	0.4 (0.7)	6.0 (11.3)	0.6 (1.1)	4.5 (8.5)	19.5 (36.7)	53.2 (100.0)
오스트리아	6.9 (13.1)	0.8 (1.6)	1.6 (3.0)	5.0 (9.5)	0.5 (1.0)	0.7 (1.4)	8.2 (15.7)	1.1 (2.0)	5.8 (11.1)	21.8 (41.7)	52.3 (100.0)
이탈리아	8.7 (16.7)	1.6 (3.0)	2.0 (3.8)	4.4 (8.5)	0.9 (1.8)	0.8 (1.6)	7.5 (14.4)	0.9 (1.7)	4.8 (9.2)	20.4 (39.2)	51.9 (100.0)
영국	4.5 (8.6)	2.7 (5.3)	2.8 (5.4)	4.3 (8.4)	1.1 (2.1)	1.5 (2.9)	8.5 (16.4)	1.2 (2.3)	6.9 (13.5)	18.0 (35.0)	51.5 (100.0)
네덜란드	7.7 (15.1)	1.5 (2.9)	2.0 (3.9)	5.8 (11.2)	0.9 (1.8)	1.1 (2.1)	6.8 (13.3)	1.5 (2.9)	6.0 (11.7)	18.1 (35.3)	51.4 (100.0)
아이슬란드	10.2 (20.0)	0.0 (0.1)	1.6 (3.2)	6.0 (11.8)	0.7 (1.3)	0.5 (1.0)	8.4 (16.4)	3.7 (7.3)	8.6 (16.8)	11.3 (22.2)	51.0 (100.0)

	일반	국방	치안	경제	환경 보호	주택	보건	문화 및 지역	교육	사회 보호	일반정부 총지출
헝가리	10.3 (20.5)	0.8 (1.6)	2.0 (3.9)	5.5 (10.9)	0.7 (1.3)	1.2 (2.4)	5.0 (9.9)	1.4 (2.8)	5.3 (10.4)	18.3 (36.2)	50.5 (100.0)
슬로 베니아	5.8 (11.8)	1.5 (3.0)	1.7 (3.5)	5.0 (10.1)	0.9 (1.9)	0.9 (1.8)	6.9 (14.0)	1.8 (3.7)	6.7 (13.6)	18.0 (36.5)	49.1 (100.0)
아일랜드	3.8 (7.7)	0.5 (1.1)	2.0 (4.1)	7.4 (15.0)	1.3 (2.8)	2.1 (4.2)	8.9 (18.1)	0.9 (1.7)	5.6 (11.4)	16.5 (33.8)	48.9 (100.0)
포르투갈	6.9 (14.4)	1.4 (3.0)	2.2 (4.6)	3.9 (8.0)	0.7 (1.5)	0.6 (1.3)	7.1 (14.7)	1.1 (2.4)	6.7 (13.9)	17.4 (36.1)	48.0 (100.0)
독일	6.1 (12.9)	1.2 (2.4)	1.7 (3.5)	3.6 (7.6)	0.7 (1.4)	0.7 (1.6)	6.9 (14.5)	0.7 (1.4)	4.4 (9.2)	21.6 (45.6)	47.5 (100.0)
노르웨이	4.9 (10.4)	1.8 (3.7)	1.0 (2.2)	4.5 (9.4)	0.7 (1.4)	0.7 (1.5)	7.9 (16.6)	1.4 (3.0)	6.2 (13.0)	18.3 (38.7)	47.3 (100.0)
체코	4.7 (10.3)	1.1 (2.4)	2.2 (4.7)	7.6 (16.4)	0.7 (1.6)	1.2 (2.6)	8.0 (17.4)	1.5 (3.2)	5.0 (10.9)	14.0 (30.5)	45.9 (100.0)
스페인	5.2 (11.3)	1.0 (2.3)	2.1 (4.7)	5.6 (12.3)	1.0 (2.1)	1.2 (2.6)	6.7 (14.7)	1.8 (3.8)	5.0 (10.9)	16.1 (35.2)	45.8 (100.0)
폴란드	5.7 (12.8)	1.1 (2.4)	2.0 (4.4)	5.3 (12.0)	0.7 (1.5)	1.2 (2.6)	5.1 (11.6)	1.3 (3.0)	5.6 (12.6)	16.5 (37.1)	44.4 (100.0)
일본	5.2 (12.3)	1.0 (2.3)	1.5 (3.6)	4.8 (11.3)	1.5 (3.6)	0.8 (1.8)	8.5 (19.9)	0.1 (0.3)	4.3 (10.0)	14.9 (34.9)	42.5 (100.0)
룩셈 부르크	4.4 (10.3)	0.3 (0.7)	1.0 (2.3)	4.8 (11.4)	1.1 (2.7)	0.8 (1.9)	5.0 (12.0)	1.9 (4.4)	5.0 (11.8)	17.9 (42.5)	42.2 (100.0)
미국	4.9 (11.5)	4.9 (11.7)	2.3 (5.4)	4.2 (10.1)		1.3 (3.1)	8.7 (20.5)	0.3 (0.7)	6.7 (15.8)	8.9 (21.1)	42.2 (100.0)
슬로 바키아	5.4 (13.1)	1.5 (3.6)	2.6 (6.2)	5.2 (12.5)	0.7 (1.6)	0.8 (1.8)	7.8 (18.7)	1.1 (2.6)	4.3 (10.4)	12.2 (29.5)	41.5 (100.0)
스위스	3.8 (11.4)	0.9 (2.7)	1.7 (5.1)	4.2 (12.4)	0.5 (1.6)	0.2 (0.6)	1.9 (5.6)	0.9 (2.7)	5.7 (16.9)	13.8 (41.0)	33.7 (100.0)
한국	4.6 (14.1)	2.8 (8.5)	1.4 (4.1)	7.3 (22.1)	1.0 (3.2)	1.4 (4.2)	4.3 (13.1)	0.8 (2.5)	5.2 (15.8)	4.1 (12.4)	33.1 (100.0)

자료: OECD Stats.

또한 연금성숙도, 인구고령화율 및 국민소득, 국민부담률 수준을 고려하면 OECD국가들과의 규모적 차이도 상당히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연금성숙기를 2030년으로 가정하여 연금성숙도 4%를 반영하면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약 11.5%로 OECD평균의 약 60%수준이다. 고령화율과 국민소득을 고려하여도 OECD국가와의 차이는 감소한다. 인구고령화율 10%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선진국가들의 약 45%~68% 수준이다.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 기준으로 보면 OECD평균의 약 38%수준이다.

〈표 3-4〉 \$20,000 도달 시점의 사회보장지출과 경제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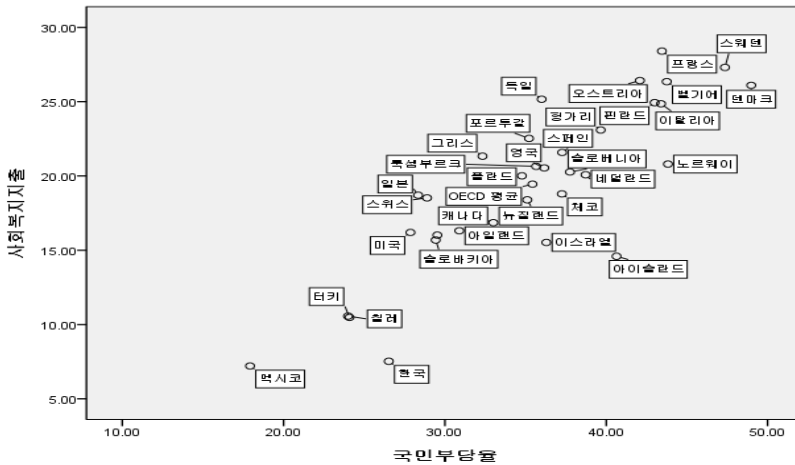
국가	공공사회 복지지출	국민 부담률	\$20,000 도달시점	재정수지	여성 고용률	실업률	노인인구 비율
스웨덴	30	51.4	1988	3.3	80.1	1.8	17.8
벨기에	25.8	41.7	1992	-8.2	44.6	7.1	15.3
네덜란드	25.5	45.1	1991	-2.7	49.3	5.5	12.9
프랑스	24.9	42	1990	-2.4	50.3	8.4	14
노르웨이	24.2	40.3	1992	-1.9	66.7	6.5	16.2
오스트리아	23.8	39.7	1990	-2.5	-	4	14.9
덴마크	23.8	48.9	1987	3	71	5	15.4
헝가리	23.1	40.2	2007	-5	50.9	7.4	16.1
핀란드	23	42.7	1988	5.2	69.6	4.2	13
포르투갈	22.5	35.3	2007	-2.7	61.9	8.1	17.3
독일	21.7	34.8	1990	-2.8	52.2	4.2	14.9
스페인	21	34.2	2003	-0.2	46.8	11.1	16.9
이탈리아	20.8	40.2	1994	-9.1	35.4	10.6	16.3
폴란드	20	34.3	2007	-1.9	50.6	9.6	13.4
그리스	19.9	31.1	2004	-7.4	45.5	10.5	18
룩셈부르크	19.6	36.1	1988	4.3	40.6	2	13.4
영국	19.6	33.8	1996	-4.2	62.5	7.9	15.9
체코	19.5	37.5	2005	-3.6	68.3	7.9	14.1
OECD(26) 평균	19.5	36.3	-	-1.5	59	6.3	14
뉴질랜드	18	33.8	2003	4	65.7	4.8	11.8
캐나다	16.7	34.8	1989	-4.6	62.4	7.5	11.1
호주	16.2	28.1	1995	-3.7	59	8.2	11.9
슬로바키아	15.7	29.3	2007	-1.9	53	11.2	11.9
스위스	15	36.4	1987	-0.1	66.5	3.1	14.4
아일랜드	14.8	32.5	1996	-0.1	76.5	11.7	11.4
아이슬란드	13.7	31.4	1989	-4.4	74.5	2.5	10.5
미국	13.1	28.4	1988	-3.7	63	5.5	12.3
일본	11.5	28.6	1991	1.8	56.6	2.1	12.6
터키	10.5	24.2	2007	-	22.8	8.6	6
한국	7.5	26.5	2007	4.7	53.2	3.2	9.9
멕시코	7.2	21	2007	-	43.6	3.7	5.3

주: -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터키는 \$20,000 미만으로 2007년 기준으로 작성함. 단, OECD 평균에서는 제외함.

- 해당연도의 결측값이 있을시 근접년도 값으로 대체 - 재정수지: 독일(91년), 룩셈부르크(90년), - 여성고용률: 아이슬란드(91년), 스위스(90년) - 실업률: 독일(91년), 스위스(90년) 값임. 단, 근접년도 차이가 3년 이상일 경우 결측값으로 입력
- 재정수지, 국민부담률,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비율임.
- 여성고용률 부분의 OECD(26) 평균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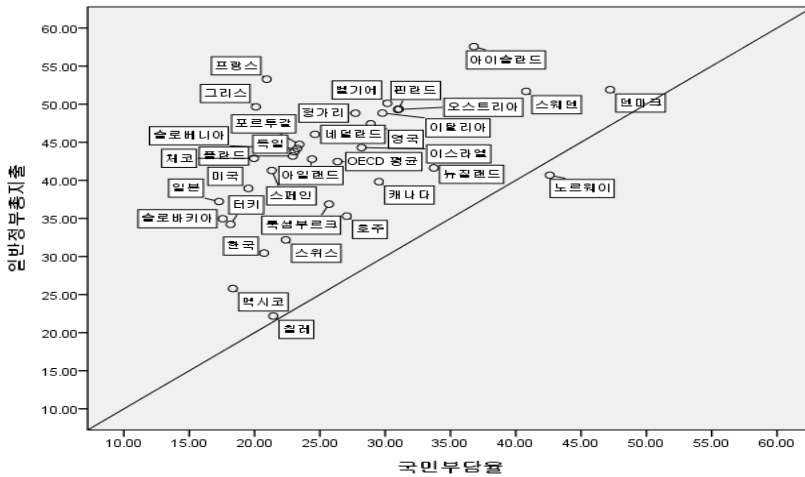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s. National Accounts,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그림 3-1] 국민부담률 및 사회복지지출비율(2007)



자료 : OECD Stats.

[그림 3-2] 국민부담률 및 일반정부총지출지출비율(2008)



자료 : OECD Stats.

주요국가들의 복지지출의 재원배분현황과 비교해볼때, 우리나라는 노령관련 지출,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부문 지출의 비중이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보건관련 지출 및 실업관련 지출은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노령관련지출은 GDP대비 1.61%(전체 복지지출대비 21.41%)로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9.9%로 OECD 국가 평균 14.2%보다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노령관련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며, 관련 사회보험료의 인상 및 국고지원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 관련 복지재원 증가에 따른 추가적 세수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속도의 조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개선과 정비를 통한 재정절감노력이 추가적 재원확충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 등 가족분야의 지출은 GDP의 0.46%(전체 복지지출대비 26.09%)로 주요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자녀양육의 국가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지출들이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가족관련 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때는 추가적 세수확충 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육관련 지출이 여성노동공급확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유인을 강화하고, 보육료지원과 관련된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급증하는 보육관련 지출에 대하여는 한국적 상황하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개인, 국가, 기업의 책임이 공조될 필요성 있다. 일례로, 자녀양육의 공적책임과 지출이 높은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고용주부담률이 큰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지출은 GDP의 약 0.13%(전체 복지지출 대비 1.73%)로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볼 때, 복지국가로서의 성패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사이클에 달려있는 만큼 적극적노동시장정책분야는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다. 향후 관련 지출의 증가와 추가적 재원확충이 요구된다.

〈표 3-5〉 OECD국가들의 복지지출 자원배분(2007년)

(GDP대비 비율임, ()은구성비)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택	기타	계
프랑스	11.1 (38.9)	1.7 (6.2)	1.8 (6.2)	7.5 (26.4)	3.0 (10.5)	0.9 (3.2)	1.4 (4.8)	0.8 (2.7)	0.3 (1.2)	28.4 (100.0)
스웨덴	9.0 (32.9)	0.5 (2.0)	5.0 (18.4)	6.6 (24.1)	3.4 (12.3)	1.1 (4.0)	0.7 (2.4)	0.5 (1.7)	0.6 (2.2)	27.3 (100.0)
오스트리아	10.7 (40.7)	2.0 (7.4)	2.3 (8.8)	6.8 (25.7)	2.6 (9.9)	0.7 (2.6)	0.9 (3.5)	0.1 (0.4)	0.3 (1.1)	26.4 (100.0)
벨기에	7.1 (26.9)	1.9 (7.2)	2.3 (8.9)	7.3 (27.8)	2.6 (9.7)	1.2 (4.6)	3.1 (11.9)	0.1 (0.6)	0.7 (2.5)	26.3 (100.0)
덴마크	7.3 (27.9)	0.0 (0.0)	4.4 (16.7)	6.5 (25.0)	3.3 (12.6)	1.3 (5.0)	1.9 (7.4)	0.7 (2.7)	0.7 (2.8)	26.1 (100.0)
독일	8.7 (34.4)	2.1 (8.2)	1.9 (7.5)	7.8 (31.2)	1.8 (7.3)	0.7 (2.9)	1.4 (5.5)	0.6 (2.4)	0.2 (0.7)	25.2 (100.0)
핀란드	8.4 (33.7)	0.8 (3.3)	3.6 (14.3)	6.0 (24.1)	2.8 (11.3)	0.9 (3.5)	1.5 (6.2)	0.2 (1.0)	0.5 (2.2)	24.9 (100.0)
이탈리아	11.7 (47.2)	2.4 (9.7)	1.7 (7.0)	6.6 (26.7)	1.4 (5.6)	0.5 (1.8)	0.4 (1.8)	0.0 (0.1)	0.0 (0.1)	24.9 (100.0)
헝가리	8.3 (36.0)	1.3 (5.8)	2.7 (11.5)	5.2 (22.7)	3.5 (15.1)	0.3 (1.4)	0.7 (2.9)	0.9 (3.9)	0.1 (0.6)	23.1 (100.0)
포르투갈	9.2 (41.0)	1.6 (7.1)	2.1 (9.5)	6.6 (29.5)	1.2 (5.1)	0.5 (2.3)	1.0 (4.4)	0.0 (0.0)	0.3 (1.1)	22.5 (100.0)
스페인	6.5 (30.3)	1.9 (8.9)	2.5 (11.7)	6.1 (28.1)	1.2 (5.7)	0.7 (3.4)	2.1 (9.8)	0.2 (0.9)	0.3 (1.2)	21.6 (100.0)
그리스	10.0 (47.0)	2.0 (9.4)	0.9 (4.2)	5.9 (27.5)	1.1 (5.1)	0.2 (0.8)	0.5 (2.2)	0.5 (2.2)	0.4 (1.8)	21.3 (100.0)
노르웨이	6.2 (29.9)	0.3 (1.2)	4.3 (20.6)	5.7 (27.4)	2.8 (13.5)	0.6 (2.7)	0.2 (1.0)	0.1 (0.7)	0.6 (2.9)	20.8 (100.0)
룩셈부르크	4.8 (23.5)	1.7 (8.3)	2.7 (13.2)	6.4 (30.8)	3.1 (15.2)	0.5 (2.3)	0.9 (4.1)	0.1 (0.7)	0.4 (2.0)	20.6 (100.0)
영국	5.8 (28.1)	0.1 (0.7)	2.4 (11.9)	6.8 (33.3)	3.2 (15.8)	0.3 (1.5)	0.2 (1.0)	1.4 (7.0)	0.2 (0.8)	20.5 (100.0)
네덜란드	5.3 (26.2)	0.2 (1.2)	2.9 (14.6)	6.0 (29.6)	2.0 (9.9)	1.1 (5.4)	1.1 (5.7)	0.4 (1.9)	1.1 (5.5)	20.1 (100.0)
폴란드	8.7 (43.6)	2.0 (9.9)	2.4 (11.9)	4.6 (22.8)	1.3 (6.5)	0.5 (2.5)	0.3 (1.6)	0.1 (0.4)	0.2 (0.8)	20.0 (100.0)
OECD평균	6.4 (33.5)	1.0 (5.0)	2.1 (11.1)	5.8 (30.2)	2.0 (10.1)	0.5 (2.4)			0.7 (3.6)	19.3 (100.0)
체코	6.9 (36.8)	0.7 (4.0)	2.3 (12.5)	5.8 (30.6)	2.0 (10.6)	0.3 (1.4)	0.6 (3.1)	0.1 (0.3)	0.1 (0.8)	18.8 (100.0)
일본	8.8 (47.0)	1.3 (6.9)	0.8 (4.2)	6.3 (33.7)	0.8 (4.2)	0.2 (0.9)	0.3 (1.7)		0.3 (1.4)	18.7 (100.0)
스위스	6.3 (34.0)	0.4 (1.9)	3.0 (16.2)	5.6 (30.2)	1.3 (6.8)	0.6 (3.2)	0.6 (3.4)	0.1 (0.6)	0.7 (3.7)	18.5 (100.0)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택	기타	계
뉴질랜드	4.2 (22.7)	0.1 (0.7)	2.5 (13.4)	7.1 (38.5)	3.0 (16.6)	0.4 (1.9)	0.2 (1.2)	0.8 (4.1)	0.1 (0.8)	18.4 (100.0)
캐나다	3.8 (22.6)	0.4 (2.3)	0.9 (5.3)	7.0 (41.6)	1.0 (5.7)	0.3 (1.7)	0.6 (3.3)	0.4 (2.3)	2.6 (15.2)	16.9 (100.0)
아일랜드	3.1 (19.1)	0.8 (4.9)	1.8 (10.7)	5.8 (35.6)	2.6 (15.9)	0.6 (3.9)	1.0 (6.0)	0.3 (1.7)	0.4 (2.2)	16.3 (100.0)
미국	5.3 (32.7)	0.7 (4.3)	1.3 (8.1)	7.2 (44.7)	0.7 (4.1)	0.1 (0.7)	0.3 (2.1)	..	0.5 (3.4)	16.2 (100.0)
호주	4.3 (26.9)	0.2 (1.1)	2.2 (14.0)	5.7 (35.9)	2.4 (15.3)	0.3 (1.9)	0.4 (2.5)	0.3 (1.8)	0.1 (0.5)	16.0 (100.0)
슬로바키아	5.4 (34.2)	0.8 (5.3)	1.5 (9.4)	5.2 (33.0)	1.8 (11.4)	0.2 (1.4)	0.4 (2.4)	0.0 (0.0)	0.5 (3.0)	15.7 (100.0)
아이슬란드	2.3 (15.8)	0.0 (0.1)	2.2 (15.3)	5.7 (39.4)	2.9 (19.6)	0.0 (0.3)	0.2 (1.3)	0.6 (4.2)	0.6 (4.0)	14.6 (100.0)
터키	5.0 (48.0)	1.2 (11.5)	0.1 (1.3)	4.1 (39.1)	0.0 (0.1)	0.0 (0.0)	0.0 (0.0)	..	..	10.5 (100.0)
한국	1.6 (21.4)	0.3 (3.4)	0.6 (7.3)	3.5 (46.5)	0.5 (6.1)	0.1 (1.7)	0.3 (3.3)	..	0.8 (10.3)	7.5 (100.0)
멕시코	1.1 (15.9)	0.2 (3.4)	0.1 (0.8)	2.7 (36.8)	1.0 (13.8)	0.0 (0.3)	..	1.3 (17.4)	0.8 (11.7)	7.2 (100.0)

자료: OECD Stats.

제2절 세입구조와 사회보장 재원구조의 국제비교

1. 세입구조의 국제비교

OECD국가들의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대체로 북유럽국가들의 세입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정부규모자체가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보다 현저하게 큼을 알 수 있다. 북유럽국가들의 세입규모는 기타 국가들에 비해 약 10%정도 큰 규모인데, 이는 이들 국가들의 복지급여가 대부분의 경우 과세된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OECD 30개국 평균은 약 GDP의 34.8%(2008년)정도인데, 평균이하의 국가들에는 폴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그리스를 포함하여, 멕시코, 칠레, 터키, 미국, 한국, 호주, 일본 등이 포함된다.²⁾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세입은 GDP대비

26.5%(2008년)로, 칠레(22.5%), 터키(24.2%), 미국(26.1%)에 이어 4번째로 낮다. 미국의 GDP대비 총세입규모는 워낙 낮은 편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28.1%)과 호주(27.1%)도 총세입규모가 작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입규모는 작지만, 세입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OECD 평균적으로 직접세가 총세입 대비 35.8%(GDP의 약 12.5%)를, 간접세가 총세입 대비 31.1%를(GDP의 약 10.8%) 차지하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총세입의 약 25.9%(GDP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는 체코(총세입 대비 44.6%), 슬로바키아(총세입 대비 40.8%), 일본(총세입 대비 38.6%)이 1,2,3위이며, 다음으로 슬로베니아, 독일, 그리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등의 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고용주 부담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한국의 사회보장기여금은 2008년 총세입 대비 21.8%로 OECD평균보다 낮다. 반면 뉴질랜드와 호주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총세입의 0%로, 덴마크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총세입의 2%에 불과하여, 조세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특징적인 국가들로 나타나고 있다. 칠레(총세입대비 6.4%), 아이슬란드(총세입대비 7.7%)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고, 조세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OECD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직접세 비중(53.6%)이 간접세(49.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이 매우 낮은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랜드는 간접세에 비하여 직접세가 각각 60.5%, 60.4%, 59.3%, 48.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비중이

2) OECD revenue statistics상의 일반정부 총세입 수치이며, 이는 National Account상의 일반정부 총세입비율(자국통화로 계산)과는 약간 상이하며, Euro Stat상의 자료와도 상이하다. 이는 revenue statistics에서 포함하는 조세항목과 National Account상의 조세항목의 차이점이 있고, 자국통화 계산시의 차이점이 반영된 이유인 것으로 사료된다.

높아진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칠레는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이 낮음에도 간접세가 50.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세수가 간접세로 충당되는 것이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그 외에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는 노르웨이(50.8%), 캐나다(49.1%), 스위스(47.7%), 미국(45.2%), 영국(40%), 핀란드(39%), 벨기에(36.3%)등이다.

조세수입만 놓고 보았을때 OECD국가들의 평균은 직접세가 53.6%, 간접세가 46.4%이다. 간접세 대비 직접세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72%)이다. 다음으로 스위스(68.8%), 호주(68.4%), 캐나다(67.7%), 노르웨이(66.5%), 덴마크(65.2%), 일본(65.1%), 뉴질랜드(64.2%), 벨기에(60.9%)등의 순이다. 아이슬란드와 칠레는 조세수입이 정부 총수입의 대다수임에도 직접세 비중이 각각 56.7%, 42.4%로 낮은 편이다. 프랑스는 간접세 비율이 50.5%로 직접세보다 약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유사하나, 2008년의 경우 간접세의 비중이 31.6%로 직접세 비중 31%보다 약간 높다. 직접세비중은 OECD평균 35.8%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조세수입만으로 보면 직접세가 49.4%, 간접세가 50.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수가 GDP대비 3.1%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하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로 낮은 편이다. 법인세수는 GDP대비 4.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GDP 탄력성은 1.175(1981 ~2009년)으로 GDP증가율에 대하여 비교적 단위탄력적으로 세수가 증대할 전망이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향후에도 경제성장축진과 외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법인세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도 요구된다. 간접세수는 GDP 대비 8.4%로 북유럽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접세 31%보다 약간 높은 31.6%수준이다.

〈표 3-6〉 GDP대비 세입비중(2008년)

	총세입 부담	직접세								간접세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기타
		직접세 총부담	개인			법인 총부담	법인		총 기여금		개인	법인	자영업자		
			개인 총부담	소득세	자본		법인 총부담	이윤						자본	
덴마크	48.2 (100)	29.2 (60.5)	25.2 (52.4)	25.2 (52.3)	0.0 (0.0)	3.4 (7.1)	3.4 (7.1)	0.0 (0.0)	15.6 (32.5)	1.0 (2.0)	1.0 (2.0)	0.0 (0.0)	0.0 (0.0)	2.4 (5.0)	
스웨덴	46.3 (100)	16.8 (36.3)	13.8 (29.8)	13.0 (28.1)	0.8 (1.8)	3.0 (6.4)	3.0 (6.4)	0.0 (0.0)	12.8 (27.7)	11.5 (24.8)	2.7 (5.7)	8.7 (18.8)	0.2 (0.5)	5.2 (11.2)	
벨기에	44.2 (100)	16.8 (38.0)	13.5 (30.5)	-0.2 (-0.5)	..	3.3 (7.5)	0.3 (0.8)	..	10.8 (24.5)	13.9 (31.5)	4.2 (9.6)	8.4 (19.0)	1.3 (2.9)	2.6 (5.9)	
이탈 리아	43.3 (100)	14.9 (34.4)	11.6 (26.8)	11.6 (26.8)	0.0 (0.0)	3.7 (8.6)	3.7 (8.6)	0.0 (0.0)	10.6 (24.5)	13.5 (31.2)	2.5 (5.7)	9.2 (21.3)	1.8 (4.1)	4.3 (10.0)	
프랑스	43.2 (100)	10.4 (24.1)	7.5 (17.4)	7.5 (17.4)	0.0 (0.0)	2.9 (6.7)	2.9 (6.7)	0.0 (0.0)	10.6 (24.5)	16.1 (37.2)	4.0 (9.2)	10.9 (25.3)	1.2 (2.8)	6.1 (14.1)	
핀란드	43.1 (100)	16.8 (39.0)	13.3 (30.9)	13.3 (30.9)	..	3.5 (8.1)	3.5 (8.1)	..	13.0 (30.0)	12.1 (28.0)	2.2 (5.1)	9.0 (20.9)	0.9 (2.0)	1.3 (2.9)	
오스 트리아	42.7 (100)	13.1 (30.7)	9.9 (23.1)	9.9 (23.1)	0.0 (0.0)	2.5 (5.7)	2.5 (5.7)	0.0 (0.0)	11.6 (27.1)	14.3 (33.5)	5.8 (13.6)	6.7 (15.7)	1.8 (4.1)	3.7 (8.7)	
노르 웨이	42.6 (100)	21.6 (50.8)	9.1 (21.4)	9.1 (21.4)	0.0 (0.0)	12.5 (29.4)	12.5 (29.4)	0.0 (0.0)	10.9 (25.6)	8.9 (20.9)	2.9 (6.9)	5.4 (12.8)	0.5 (1.2)	1.2 (2.7)	
헝가리	40.2 (100)	10.4 (26.0)	7.8 (19.4)	7.8 (19.4)	0.0 (0.0)	2.6 (6.6)	..	..	14.9 (37.1)	13.0 (32.5)	3.4 (8.5)	9.4 (23.4)	0.0 (0.0)	1.8 (4.4)	
네덜	39.1 (100)	10.6 (27.2)	7.5 (19.1)	7.5 (19.1)	0.0 (0.1)	3.2 (8.1)	3.2 (8.1)	0.0 (0.0)	11.8 (30.3)	14.5 (37.0)	6.8 (17.4)	4.9 (12.4)	2.8 (7.2)	2.2 (5.5)	
슬로 베니아	37.2 (100)	8.4 (22.6)	5.9 (15.8)	5.9 (15.8)	0.0 (0.0)	2.5 (6.8)	2.5 (6.8)	0.0 (0.0)	13.2 (35.6)	14.1 (37.8)	7.4 (19.9)	5.5 (14.8)	1.1 (3.1)	1.5 (4.0)	

	총세입 부담	직접세						간접세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기타	
		직접세 총부담	개인			범인 총부담	범인		총 기여금	개인	범인	자영업자		
			개인 총부담	소득세	자본		범인 총부담							이윤
독일	37.0 (100)	11.5 (31.1)	9.6 (26.0)	9.6 (0.0)	0.0 (0.0)	1.9 (5.1)	1.9 (5.1)	0.0 (0.0)	10.5 (28.5)	13.9 (37.6)	6.1 (16.6)	6.5 (17.7)	1.2 (3.4)	1.0 (2.8)
아이 슬란드	36.8 (100)	17.8 (48.5)	13.2 (36.0)	13.2 (0.0)	0.0 (0.0)	1.9 (5.2)	1.9 (5.2)	0.0 (0.0)	13.6 (37.0)	2.8 (7.7)	..	..	0.0 (0.0)	2.5 (6.9)
체코	36.0 (100)	7.9 (21.9)	3.7 (10.3)	3.7 (0.0)	0.0 (0.0)	4.2 (11.6)	4.2 (11.6)	0.0 (0.0)	11.5 (31.9)	16.1 (44.6)	3.6 (10.0)	10.2 (28.2)	2.3 (6.4)	0.6 (1.6)
영국	35.7 (100)	14.3 (40.0)	10.7 (30.1)	10.4 (1.0)	0.4 (0.5)	3.6 (10.0)	3.4 (9.5)	0.2 (0.5)	10.3 (28.8)	6.8 (19.0)	2.6 (7.4)	3.9 (11.0)	0.2 (0.6)	4.3 (12.1)
룩셈 부르크	35.5 (100)	12.8 (36.0)	7.7 (21.7)	7.7 (0.0)	0.0 (0.0)	5.1 (14.3)	5.1 (14.3)	0.0 (0.0)	9.9 (28.0)	10.1 (28.3)	4.6 (13.0)	4.3 (12.1)	1.1 (3.2)	2.7 (7.7)
포르 투갈	35.2 (100)	9.3 (26.3)	5.6 (16.0)	..	..	3.6 (10.3)	..	..	12.9 (36.6)	11.5 (32.7)	3.4 (9.8)	7.5 (21.4)	0.6 (1.6)	1.5 (4.3)
OECD 평균	34.8 (100)	12.5 (35.8)	9.0 (25.9)	8.4 (24.1)	0.1 (0.4)	3.5 (10.1)	3.3 (9.6)	0.0 (0.1)	10.8 (31.1)	9.0 (25.9)	3.3 (9.4)	5.2 (14.9)	1.0 (2.8)	2.5 (7.3)
폴란드	34.3 (100)	8.1 (23.6)	5.4 (15.6)	..	..	2.7 (7.9)	0.0 (0.0)	0.0 (0.0)	13.0 (38.0)	11.4 (33.1)	4.6 (13.4)	4.8 (13.9)	2.0 (5.9)	1.8 (5.3)
뉴질 랜드	33.7 (100)	20.4 (60.4)	13.7 (40.7)	13.7 (0.0)	0.0 (0.0)	4.4 (13.1)	4.4 (13.1)	0.0 (0.0)	11.4 (33.8)	0.0 (0.0)	0.0 (0.0)	0.0 (0.0)	..	2.0 (5.8)
스페인	33.3 (100)	10.3 (30.9)	7.1 (21.5)	7.1 (0.0)	0.0 (0.0)	2.8 (8.4)	2.8 (8.4)	0.0 (0.0)	8.3 (25.1)	12.1 (36.4)	1.8 (5.5)	8.8 (26.5)	1.5 (4.4)	2.5 (7.7)
그리스	32.6 (100)	7.3 (22.5)	4.8 (14.7)	4.7 (0.1)	0.0 (0.0)	2.5 (7.5)	2.5 (7.5)	0.0 (0.0)	11.4 (34.9)	12.2 (37.6)	4.7 (14.5)	5.7 (17.5)	1.8 (5.6)	1.6 (5.0)
캐나다	32.3 (100)	15.9 (49.1)	12.0 (37.2)	12.0 (0.0)	0.0 (0.0)	3.3 (10.4)	3.3 (10.4)	0.0 (0.0)	7.6 (23.6)	4.8 (14.7)	1.9 (5.9)	2.7 (8.3)	0.2 (0.5)	4.1 (12.6)

	총세입 부담	직접세							간접세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기타
		직접세 총부담	개인			법인				총 기여금	개인	법인	자영업자	
			개인 총부담	소득세	지분	법인 총부담	이윤	지분						
슬로 바키아	29.3 (100)	6.2 (21.2)	2.8 (9.5)	2.8 (9.5)	0.0 (0.0)	3.1 (10.7)	..	..	10.5 (36.0)	12.0 (40.8)	2.9 (10.0)	6.7 (22.7)	2.4 (8.1)	0.6 (2.1)
스위스	29.1 (100)	13.9 (47.7)	9.1 (31.4)	9.1 (31.4)	0.0 (0.0)	3.3 (11.4)	3.3 (11.4)	0.0 (0.0)	6.3 (21.7)	6.7 (23.0)	3.1 (10.8)	3.1 (10.6)	0.5 (1.6)	2.2 (7.5)
아일랜드	28.8 (100)	10.8 (37.6)	8.0 (27.9)	7.2 (25.1)	0.8 (2.7)	2.8 (9.7)	2.8 (9.7)	0.0 (0.0)	10.7 (37.1)	5.1 (17.7)	1.5 (5.4)	3.3 (11.3)	0.3 (1.0)	2.2 (7.6)
일본	28.1 (100)	9.5 (33.7)	5.6 (20.0)	5.6 (20.0)	0.0 (0.0)	3.9 (13.7)	3.9 (13.7)	0.0 (0.0)	5.1 (18.0)	10.9 (38.6)	4.8 (17.2)	5.0 (17.9)	1.0 (3.6)	2.7 (9.7)
호주	27.1 (100)	16.0 (59.3)	10.2 (37.6)	10.2 (37.6)	0.0 (0.0)	5.9 (21.7)	5.9 (21.7)	0.0 (0.0)	7.4 (27.4)	0.0 (0.0)	0.0 (0.0)	0.0 (0.0)	..	3.6 (13.3)
한국	26.5 (100)	8.2 (31.0)	4.0 (15.0)	3.1 (11.6)	0.9 (3.4)	4.2 (15.9)	4.2 (15.9)	0.0 (0.0)	8.4 (31.6)	5.8 (21.8)	2.4 (8.9)	2.6 (9.6)	0.9 (3.3)	4.1 (15.6)
미국	26.1 (100)	11.8 (45.2)	9.9 (38.1)	9.3 (35.6)	0.7 (2.5)	1.8 (7.1)	1.7 (6.3)	0.2 (0.7)	4.6 (17.6)	6.5 (25.1)	2.9 (11.1)	3.3 (12.6)	0.4 (1.4)	3.2 (12.1)
터키	24.2 (100)	5.8 (23.9)	4.0 (16.5)	4.0 (16.5)	..	1.8 (7.3)	1.8 (7.3)	..	11.0 (45.5)	6.1 (25.0)	2.0 (8.4)	3.0 (12.5)	1.0 (4.1)	1.4 (5.6)
칠레	22.5 (100)	8.4 (37.5)	..	0.0 (0.0)	0.0 (0.0)	..	..	..	11.4 (50.6)	1.4 (6.4)	1.4 (6.1)	0.1 (0.3)	0.0 (0.0)	1.2 (5.4)
멕시코	21.0 (100)	5.2 (24.8)	..	..	..	..	..	..	12.4 (59.2)	2.7 (12.7)	..	..	..	0.7 (3.4)

주: - Revenue Statistics의 세부항목은 총세입부담(Total tax revenue), 직접세 총부담(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법인 총부담(of individuals)소득세(on income and profits), 자본(on capital gains), 법인 총부담(of Corporate), 이윤(On profits), 자본(On capital gains), 간접세 부담(goods and services),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기타는 나머지 항목의 합.

- ()는 총세입부담에 대한 비중임.

자료:OECD Stats. Revenue Statistics의 항목임.

〈표 3-7〉 GDP대비 세입비중(2008년)

OECD국가	직접세/(직접세+간접세)	간접세/(직접세+간접세)
덴마크	70%	30%
스웨덴	60%	40%
벨기에	60%	40%
이탈리아	60%	40%
프랑스	50%	50%
핀란드	60%	40%
오스트리아	50%	50%
노르웨이	70%	30%
헝가리	40%	60%
네덜란드	50%	50%
슬로베니아	40%	60%
독일	50%	50%
아이슬란드	60%	40%
체코	40%	60%
영국	60%	40%
룩셈부르크	60%	40%
포르투갈	40%	60%
OECD	50%	50%
폴란드	40%	60%
뉴질랜드	60%	40%
스페인	60%	40%
그리스	40%	60%
캐나다	70%	30%
슬로베니아	40%	60%
스위스	70%	30%
아일랜드	50%	50%
일본	70%	30%
호주	70%	30%
한국	50%	50%
미국	70%	30%
터키	30%	70%
칠레	40%	60%
멕시코	30%	70%

주: - Revenue Statistics의 세부항목은 총세입부담(Total tax revenue), 직접세 총부담(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개인 총부담(of individuals), 소득세(on income and profits), 자본(on capital gains), 법인 총부담(of Corporate), 이윤(On profits), 자본(On capital gains), 간접세 부담(goods and services),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기타는 나머지 항목의 합.

- ()는 총세입부담에 대한 비중임.

자료: OECD Stats. Revenue Statistics의 항목임.

〈표 3-8〉 OECD 주요 국가의 세율비교

국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근로자사회보장기여		고용주사회보장기여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호주	15.00	45.00	30.0	10.0	-		-	
오스트리아	36.50	50.00	25.0	20.0	15.06	18.06	21.63	
벨기에	30.00	50.00	33.99 (33.0)	21.0	13.07		34.47	
캐나다	22.00	29.00	18.0	5.0	1.73	4.95	2.42	7.37
칠레	10.00	40.00	17.0	19.0	7.0		-	
체코	15.00		19.0	20.0	4.5	6.5	34	
덴마크	3.67	18.67	25.0	25.0	8		-	
핀란드	6.50	30.00	26.0	22.0	1.28	5.2	23	
프랑스	5.50	40.00	34.43	19.6	8.61	21.46	23.35	41.60
독일	14.00	45.00	15,825 (15,0)	19.0	11.35	20.71	11.35	19.56
그리스	18.00	45.00	24.0	19.0	16		28.06	
헝가리	36.00		19.0	25.0	7.5	9.5	29.5	32
아이슬란드	27.00	33.00	18.0	25.5	8		6.17	
아일랜드	41.00		12.5	21.0	2	6	8.5	10.75
이탈리아	27.00	43.00	27.5	20.0	9.49	10.49	32.08	
일본	10.00	40.00	30.0	5.0	0.4	12.175	0.83	12.605
대한민국	15.00	35.00	22.0	10.0	3.11	4.5	5.31	9.81
룩셈부르크	8.00	38.00	21.84 (21.0)	15.0	1.4	10.95	14.1	
멕시코	6.40	30.00	30.0	16.0	1.25		0	7.64
네덜란드	10.80	52.00	25.5	19.0	6.9		6.9	7.73
뉴질랜드	19.30	35.50	30.0	12.5	-		-	
노르웨이	21.55	24.55	28.0	25.0	7.8		12.8	
폴란드	32.00		19.0	22.0	2.45	13.71	4.17	18.43
포르투갈	13.58	45.88	25.0	20.0	11		23.75	
슬로바키아	19.00		19.0	19.0	1.4	8	1.65	13.75
스페인	18.27	27.13	30.0	16.0	6.35		29.95	
스웨덴	20.00	25.00	26.3	25.0	7		31.42	
스위스	0.77	13.20	8.5	7.6	10.05	11.05	10.05	11.05
터키	20.00	35.00	20.0	18.0	15		16.5	
영국	40.00	50.00	28.0	17.5	1	11	12.8	
미국	15.00	35.00	35.0	18.0	1.45	6.2	1.45	13.85

주: 단, 한국 사회보장기여 근로자의 최저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합임. 최고는 국민연금납부비율임.
 자료: OECD TaxDatabase 2010년 기준

제3절 독일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자원 구조

독일은 연방제국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금과 세율을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공동세는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공유하는 형태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세금은 통일과 관련되어 법인세와 소득세에 부가되는 통일세, 관세일정분, 맥주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별소비세이다. 주정부의 세금은 재산세, 상속 및 증여세, 자동차세, 경주복권세, 소방세, 맥주세, 부동산취득세이다. 자치단체세는 영업세, 재산세, 부동산세, 음료수세, 유흥세, 견세, 수렵어업세, 주점허용세, 제2주택세가 있다. 그밖에 EU재정을 위한 세목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일정분이 있다. 독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총지출의 약 71%에 달하는데, 주정부세와 자치단체세는 전체 세입대비 49.1%(2007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독일의 조세체계

공동세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EU 재정을 위한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부가가치세 포함) 영업세	관세일정분 맥주세를 제외한 소비세 대부분 (담배세, 커피세, 에너지세, 삼페인세, 보험세 등) 연대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자동차세 경주복권세 소방세 맥주세 부동산취득세	영업세 재산세 부동산세 음료수세 유흥세 견세 수렵어업세 주점허용세 제2 주택세	관세 부가가치세 일정분

자료: 조세연구원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표 3-10〉 정부단계별 조세수입

(단위: 억유로, %)

	연방	세수 비중	주	세수 비중	자치 단체	세수 비중	EU	세수 비중	계	세수 비중
2000	1,988	42.5	1,895	40.5	571	12.2	218	4.7	4,672	100
2002	1,921	43.5	1,786	40.4	525	11.9	186	4.2	4,418	100
2004	1,870	44.3	1,633	38.8	513	12.3	196	4.6	4,212	100
2006	2,039	43.5	1,798	38.5	610	13.0	235	5.0	4,682	100
2007	2,300	42.7	1,979	36.8	662	12.3	441	8.2	5,382	100

자료: 조세연구원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계인용

1990년대 이전 독일 조세체계의 특징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높은 세율과 상대적으로 좁은 세원이었다. 그러나 1998년 Ecological tax reform과 2000년의 Tax reform을 거치며, 소득세율이 감소하였고, 반면 세원은 넓혀졌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은 줄고,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개인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기초공제가 증가하였으며, 최고세율이 부과되는 소득구간이 좁혀졌고, 법인세율도 감소되었다. 반면, 에너지세가 증가하였고, 감가상각비율이 축소하는등 세원확대가 이루어졌다.

독일의 정부 총세입은 GDP의 37%(2007년기준, OECD revenue statistics)으로, 직접세는 GDP의 11.5%(총세입 대비 31.1%), 간접세는 GDP의 10.5%(총세입 대비 28.5%)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은 GDP의 13.9%(총세입 대비 37.6%)이다.³⁾ 독일은 전통적으로 사회보험을 위주로 한 근로자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왔기에, 정부 총수입에서도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조세수입중에서는 간접세(47.7%)에 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52.3%로 높은 편이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노동에 부과되는 세부담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

3) 독일의 세입부문 통계수치는 OECD revenue statistics와 National account상의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다. 이에 따라 Euro Stat상의 통계수치와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는 높은 사회보험료와 자본소득에 비해 높은 근로소득세를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세율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근로소득세의 암묵적세율(implicit tax rates)은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자본소득세의 암묵적 세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독일의 개별소비세는 담배, 에너지 및 전기, 주류, 보험, 경주복권과 커피, 음료수, 화재보험(소방세), 유흥업소, 건공(건세), 주점 및 식당영업, 수렵어업, 제2주택까지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세의 경우 과세대상 주류별로도 개별소비세가 각각 부과되는데, 연방세로는 코냑세, 샴페인세, 알코올함유 음료수세, 중간생산물세가 있고, 주세인 맥주세가 있다. 세목별 세수비중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의 비중이 크며, 이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공동세이다. 공동세는 전체 세수의 약 70%(2007년 기준)를 차지한다.

〈표 3-11〉 세목별 세수입

(단위: 억유로)

세 목	2000	2002	2004	2006	2007
공동세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분)	1,357.3	1,321.9	1,239.0	1,226.1	1,317.7
소득세(연말정산분)	122.2	75.4	53.9	175.7	250.3
소득세(분리과세분)	135.1	140.2	99.2	119.0	137.9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73.3	84.8	67.7	76.3	111.8
법인세	235.7	28.6	131.2	229.0	229.3
부가가치세	1071.4	1054.6	1,047.2	1,113.2	1,275.2
수입부가가치세	337.3	327.3	326.5	353.7	421.1
연방세					
연대세	118.4	104.0	101.1	112.8	123.5
담배세	114.4	137.8	136.3	143.9	142.5
커피세	10.9	10.9	10.3	9.7	10.9
코냑세	21.5	21.5	21.9	21.6	19.6
에너지세	378.3	421.9	417.8	399.2	389.6
보험세	72.4	83.3	87.5	87.8	103.3

세 목	2000	2002	2004	2006	2007
알코올함유음료수세	-	-	-	0.1	0
삼폐인세	4.8	4.2	4.4	4.2	3.7
중간생산물세	0.3	0.3	0.3	0.3	0.3
전기세	33.6	51.0	66.0	62.7	63.6
기타연방세	4	0.2	0.1	0	0
주세					
재산세	4.3	2.4	0.8	0.3	0.1
자동차세	70.2	75.9	77.4	89.4	89.0
맥주세	8.4	8.1	7.9	7.8	7.6
부동산취득세	50.8	47.6	46.5	61.3	69.5
경주복권세	18.0	18.4	18.9	17.8	17.0
상속증여세	29.8	30.2	42.8	37.6	42.0
소방세	2.9	3.1	3.5	3.2	3.2
기초자치단체세					
영업세	270.3	234.9	283.7	383.7	401.2
부동산세	88.5	92.6	99.5	104.0	107.1
부동산취득세	1.6	0.8	0.2	0	0
기타 자치단체세	6.1	6.2	6.5	5.5	5.7
관세	33.9	29.0	30.6	38.8	39.8
계	4,672.5	4,417.1	4,428.4	4,884.4	5,382.4

자료: 조세연구원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공동세의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와 자치단체를 합한 지방정부에 대한 배분이 큰 편이다. 법인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대 50으로 나누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관해서는 연방정부가 약 42.5~44%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으로 배분된다. 영업세의 경우는 주정부의 몫이 76.9%로 대부분이 주정부에 배분된다.

〈표 3-12〉 공동세 배분비율

(단위: %)

세목	연방	주	자치단체	EU
부가가치세	43.1	43.4	2.0	11.5
소득세(근소세 원천징수분 및 연말정산분)	42.5	42.5	15.0	
소득세(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분)	44.0	44.0	12.0	
법인세	50.0	50.0	-	
영업세(역교부분)	23.1	76.9	-	

자료: 조세연구원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에서 재인용

사회보장부문에서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의 사회보장재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볼 수 있다. 정부 총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약 37.6%임을 비교할 때 사회보장기여금의 대부분이 사회보장지출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주가 약 60%를 부담하여, 근로자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세수입은 사회보장재원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3〉 독일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유형별(Type)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부 총세입	43.4	45.4	46.2	43.6	43.7	43.7	44.0	44.9
사회보장 총세입	27.4	29.0	31.0	30.9	30.3	29.4	29.9	32.6
- 사회보장기여금	19.3	20.0	20.4	19.5	19.2	18.6	18.8	20.5
•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11.6	11.6	11.8	10.9	10.7	10.3	10.4	11.1
실제적인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7.7	8.0	8.1	7.7	7.5	7.2	7.3	7.6
귀속된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4.0	3.6	3.7	3.2	3.2	3.1	3.2	3.4
•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7.7	8.3	8.6	8.6	8.5	8.3	8.4	9.4
근로자	6.5	6.8	7.0	6.8	6.7	6.5	6.7	7.2
자영업자	0.3	0.4	0.4	0.4	0.4	0.4	0.4	0.6
연금수급자와 기타 개인들	0.9	1.2	1.2	1.4	1.4	1.3	1.4	1.7
- 조세	7.2	8.3	9.9	10.8	10.5	10.3	10.4	11.5
- 기타	0.9	0.8	0.7	0.6	0.6	0.6	0.6	0.6

주: in Percentage of GDP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부담의 주체별로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가계가 총 사회보장재원 부담의 30%를, 기업이 27%를 부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23%)와 지방정부(18%)가 총 4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사회보장재원 부담의 GDP대비 비율은 1991년 9.6%에서 2009년 약 8.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계의 사회보장부담은 1991년 GDP 대비 7.8%에서 2009년 약 9.6%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부담도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재원부담의 주체는 기업에서 가계 및 정부로 이동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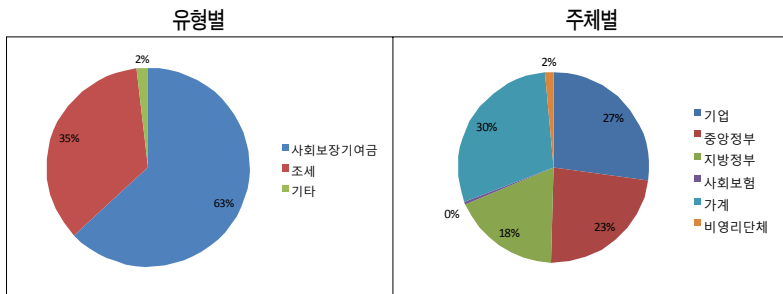
〈표 3-14〉 독일 사회보장 재원의 부담주체별 추이

주체별(Origin)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27.4	29.0	31.0	30.9	30.3	29.4	29.9	32.6
기업	9.6	9.4	9.6	8.7	8.6	8.3	8.4	8.9
중앙정부	5.0	5.6	6.4	7.1	7.0	6.8	7.0	7.6
지방정부	4.4	4.9	5.6	5.7	5.5	5.3	5.4	5.9
사회보험	0.1	0.1	0.1	0.1	0.1	0.1	0.1	0.1
가계	7.8	8.4	8.8	8.8	8.6	8.4	8.6	9.6
비영리단체	0.4	0.5	0.5	0.5	0.5	0.4	0.5	0.5

주: in Percentage of GDP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그림 3-3] 독일 사회보장재원의 유형별, 자원부담의 주체별 배분현황(2009)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제4절 미국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자원 구조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지방정부가 징세를 하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기여금으로 운영되었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유산 및 증여세, 연방정부 소비세 및 관세, 실업세, 사회보장세가 연방정부의 세목이다. 주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일반판매세, 개별판매세, 유류세, 담배세, 주세등을 부과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담배세, 주세와 등록세, 호텔숙박, 경마, 공공서비스, 보험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한다. 총 41개의 주에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5개주를 제외하고는 연방소득세의 과세표준소득을 과표로 활용한다. 일반 소비세는 지방정부의 주된 세목이지만, 주류, 담배, 유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등에 대한 소비세는 연방정부의 세목이기도 하다. 지방정부의 일반소비세는 주정부 마다 소비세율이 다르다. 연방소비세는 휘발유, 경유등 유류와 타이어등에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와 승용차, 보트, 비행기, 모피등 사치세와 특수연료, 트럭등에 부과되는 소매세, 전화 항공시설등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세, 충기류에 대한 세금, 도박관련세, 보험상품세, 트럭 및 버스도로세, 보험상품세, 주세 및 담배세, 환경세등이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도로, 공항, 운하 및 유해물질과 석탄 및 석유누출등에 목적세를 부과하여 기금에 포함하고 있다. 법인세는 46개주에서 부과되는데, 13개주를 제외한 주에서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입은 전체 세입의 58%를 차지하며, 주정부 세입은 26%, 자치단체의 세입은 전체 세입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2002).

미국 정부 총세입은 GDP의 26.1%(2007년기준, OECD revenue statistics)으로, 직접세는 GDP의 11.8%(총세입 대비 45.2%), 간접세는

GDP의 4.6%(총세입 대비 17.6%)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은 GDP의 6.5%(총세입 대비 25.1%)이다. 미국은 정부의 GDP 대비 총수입이 낮은 나라중이 하나이다. 조세수입에서는 간접세(30%)에 비해서 직접세의 비중이 70%로 매우 높은 편이다.

〈표 3-15〉 미국의 조세체계

연방세	지방정부세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일반판매세, 개별판매세
유산세	주영업세, 재산세
증여세	유틸리티세, 담배세, 주세
소비세 및 관세	상속세, 보험세, 공공서비스
FICA/자영업	경매, 유흥
실업세	등록세

〈표 3-16〉 미국 총수입과 부문별 수입(1980~2010)

(단위: 십억달러, %)

		총수입	총수입/ GDP	개인세	간접 상업세	법인세	사회 보장세	연방 지원금 ¹⁾
1980	정부	798.7	28.6	298.9	200.3	84.8	167.2	72.3
	연방정부	532.8	19.1	250.0	33.7	70.3	163.6	
	지방정부	338.2	12.1	48.9	166.7	14.5	3.6	
1985	정부	1,244.6	29.5	417.3	308.1	96.5	282.8	80.9
	연방정부	774.4	18.4	336.0	46.1	76.3	277.9	
	지방정부	521.1	12.4	81.4	262.1	20.2	4.9	
1990	정부	1,627.2	29.7	592.7	425.0	140.6	412.1	111.4
	연방정부	1,082.8	19.8	470.1	50.9	118.1	402.0	
	지방정부	738.0	13.5	122.6	374.1	22.5	9.0	
1995	정부	2,215.5	29.9	743.9	557.9	211.0	535.5	184.2
	연방정부	1,407.8	19.0	585.8	75.6	179.3	521.9	
	지방정부	991.9	13.4	158.1	482.4	31.7	13.6	
2000	정부	3,132.4	31.5	1,232.3	708.6	254.7	709.4	247.3
	연방정부	1,777.9	17.9	825.2	80.7	204.2	617.4	
	지방정부	1,322.6	13.3	243.0	621.3	35.2	10.8	
2005	정부	3,659.3	29.0	1,208.6	930.2	395.9	877.4	361.2
	연방정부	2,290.1	18.1	931.9	98.8	341.0	852.6	
	지방정부	1,730.4	13.7	276.7	831.4	54.9	24.8	

		총수입	총수입/ GDP	개인세	간접 상업세	법인세	사회 보장세	연방 지원금 ¹⁾
2006	정부	3,995.2	29.9	1,352.4	986.8	454.2	926.4	359.0
	연방정부	2,524.5	18.9	1,049.9	99.4	395.0	904.6	
	지방정부	1,829.7	13.7	302.5	887.4	59.2	21.8	
2007	정부	4,197.0	29.9	1,488.7	1,027.2	420.6	964.2	380.8
	연방정부	2,654.7	18.9	1,165.6	94.5	362.8	945.3	
	지방정부	1,923.1	13.7	323.1	932.7	57.8	18.7	
2008	정부	4,051.6	28.3	1,435.7	1,038.6	281.0	992.1	395.5
	연방정부	2,502.2	17.5	1,101.3	94.0	233.7	973.1	
	지방정부	1,944.8	13.6	334.4	944.6	47.4	19.0	
2009	정부	3,703.7	26.6	1,414.4	1,017.9	249.1	969.0	482.4
	연방정부	2,232.5	16.0	856.6	97.3	201.7	948.9	
	지방정부	1,953.6	14.0	284.8	920.6	47.4	20.2	
2010	정부	3,962.8	27.3	1,193.9	1,054.0	387.4	991.7	531.5
	연방정부	2,429.6	16.7	896.4	101.5	329.6	970.9	
	지방정부	2,064.7	14.2	297.5	952.6	57.9	20.8	

주: 1) 연방지원금은 지방정부만 해당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s

제5절 영국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영국은 세목의 대부분이 국세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목이 중앙정부의 세금이며, 지방정부는 중앙으로부터의 교부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주에는 사업세, 카운슬세(Council tax)등의 지방세가 있을뿐이다. 전체 세수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011년)정도일 뿐이다.

영국의 정부 총세입은 GDP의 35.7%(2007년기준, OECD revenue statistics)으로, 직접세는 GDP의 14.3%(총세입 대비 40%), 간접세는 GDP의 10.3%(총세입 대비 28.8%)이고, 사회보장기여금은 GDP의 6.8%(총세입 대비 19%)이다. 조세수입중에서는 간접세(40%)에 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이 60%로 높은 편이다.

〈표 3-17〉 영국의 조세체계 및 세수입구성(2011년 예산)

(단위 : %)

국세(5625억 파운드, 전체의 95.6%)		지방세(261억 파운드, 전체의 4.4%)	
세목	구성비	세목	구성비
소득세(Income Tax)	28.0	카운슬세(Council tax)	100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17.9		
소비세(Excise duties)	8.2		
법인세(Corporation tax)	8.6		
부가가치세(VAT)	17.8		
사업세(Business rates)	4.5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0.6		
상속세(Inheritance tax)	0.5		
인지세(Stamp duty)	1.6		
그 외(Other)	12.3		

자료 : HM Treasury, Budget 2011에서 발췌, 정리함

영국의 사회보장재원은 2009년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44%, 조세수입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에는 고용주의 기여분이 약 73%로 근로자 부담분보다 훨씬 높다. 재원부담의 주체별로는 중앙정부가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53%를 부담하고, 기업이 29%, 가게가 1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부담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표 3-18〉 영국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유형별(Type)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부 총세입	39.6	38.0	40.4	40.7	41.5	41.1	42.9	40.1
사회보장 총세입	26.4	28.6	27.2	26.3	24.5	24.5	28.7	31.4
- 사회보장기여금	14.2	13.9	14.3	12.8	11.1	10.6	12.6	13.8
•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7.4	7.3	8.1	9.2	8.8	7.9	9.0	10.1
실제적인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5.6	5.6	6.7	8.5	8.6	7.8	8.9	9.9
귀속된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1.7	1.6	1.4	0.7	0.2	0.2	0.2	0.2
•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6.8	6.7	6.1	3.7	2.3	2.7	3.6	3.7
근로자	6.6	6.5	6.0	3.5	2.1	2.5	3.4	3.5
자영업자	0.2	0.2	0.1	0.2	0.2	0.2	0.2	0.2
연금수급자와 기타 개인들	0.0	0.0	0.0	0.0	0.0	0.0	0.0	0.0
- 조세	11.8	14.4	12.6	13.0	13.1	12.2	13.6	15.3
- 기타	0.0	0.0	0.0	5.5	5.4	5.3	5.9	6.6

주: in Percentage of GDP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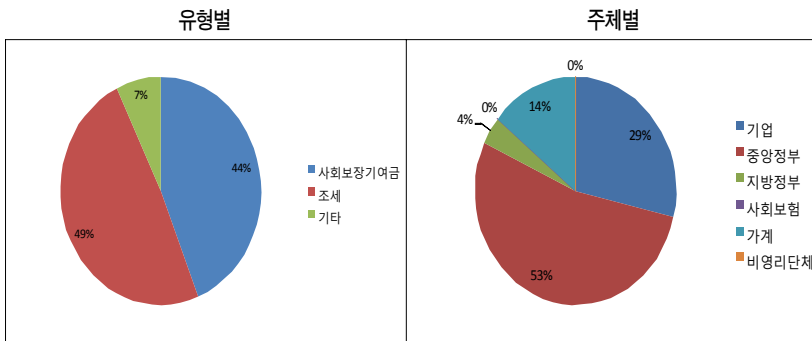
〈표 3-19〉 영국 사회보장 재원의 부담주체별 추이

주체별(Origin)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26.4	28.6	27.2	26.3	24.5	24.5	28.7	31.4
기업	5.4	5.7	6.7	7.3	6.9	6.7	8.4	9.0
중앙정부	12.5	14.8	12.9	13.3	13.4	13.4	14.8	16.7
지방정부	1.0	0.9	0.9	0.8	0.8	1.0	1.1	1.2
사회보험	0.2	0.1	0.0	0.0	0.0	0.0	0.0	0.0
가계	7.1	6.8	6.3	4.3	3.0	3.3	4.4	4.4
비영리단체	0.2	0.3	0.4	0.5	0.5	0.0	0.0	0.0

주: in Percentage of GDP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그림 3-4] 영국 사회보장재원의 유형별, 자원부담의 주체별 배분현황(2009)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제6절 프랑스의 세입구조와 사회보장재원 구조

프랑스는 재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이 국세이며, 지방세는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나대지세, 부동산세등 재산세와 등록세 관련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세목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유세, 사업소세, 예술가부담금, 석유류세, 주류, 담배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보험특별세, 수입세, 사치성 오락세, 보석 및 고가의 그림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등이 있다. 주류에는 소비세 및 국가의료 보험 분담금, 유통세가 부가되며, 맥주, 물 및 비알콜성 음료에도 음료세가 부과된다.

프랑스의 정부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전체 세입의 83%를, 주정부는 18%를 차지하고 있다(2002년). 직접세는 전체 세입의 24.1%, 간접세는 24.5%, 사회보장기여금은 전체 세입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980년대 후반 덴마크에서 사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였던 사례와 유사하다.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사회보장세(CSG,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가 부과되고 있다. 프랑스는 GDP의 45%정도나 되는 세금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사회보장비는 만성적이 적자상태에 시달렸다. 1991년 사회보장비의 재원으로 도입되어 사회보장지출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CSG는 보건, 가족 및 노령연금 기금에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사회보장기여금과는 달리 사회보장급여와 직접적 연계가 없다. CSG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과 가족급여 및 공공부조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 그리고 자산소득에 부과된다. 1993년의 경우 근로소득의 87%가 CSG의 부과대상이 되었다. 반면 사회보장급여의 47%, 자산소득의 44%만이 CSG부과 대상이 되었다. 1997년에는 CSG가 면제되었던 자산소득도 대거 부과대상으로 편입되었다. CSG가 도입되던 1991년 CSG의 세율은 1.1%였으나 동시에 노령연금 기여금은 1.05%가 인하

되었다. 1993년에는 CSG 세율이 2.4%로 인상되었고, 1997년에는 3.4%로 인상되었으나 동시에 건강보험 기여금이 1% 인하되었다. 1998년에는 7.5%로 인상되었고 동시에 건강보험 기여금은 4.75% 인하되었다. 복지급여에 대한 세율은 6.2%, 3.8%, 0%로 차등화되었다. CSG 세수는 1.1%가 가족급여기금인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CNAF)에 할당되며, 1.3%가 노령연금기금인 Fonds de Solidarite Vieillesse(FSV)기금에 할당되며, 5.1%가 건강기금인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CNAM) 기금에 할당된다. 1999년 CSG는 중앙정부 세입의 약 2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소득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CSG가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하지만, 자산에 폭넓게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누진적인 소득세 못지 않게 소득재분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20〉 프랑스의 조세체계

국세				지방세
내국세			관세	
직접세	간접세	유통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유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석유소비세	관세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 나대지세 부동산세

자료: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체계 -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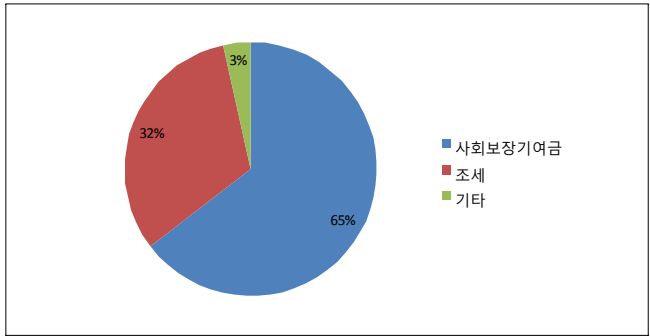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은 사회보장기여금 65%, 조세수입 30%으로 구성되어 있다(2009년). 사회보장재원으로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는데, 이중 고용주의 부담은 약 68%로 근로자의 부담보다 높다.

〈표 3-21〉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의 유형별 추이

유형별(Type)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부 총세입	47.7	48.9	50.2	50.6	50.6	49.9	49.9	49.2
사회보장 총세입	28.0	29.8	30.0	31.0	30.9	30.7	31.2	32.1
- 사회보장기여금	22.0	22.3	19.8	20.4	20.4	20.1	20.1	20.7
•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14.1	14.1	13.8	13.9	13.7	13.6	13.6	14.0
실제적인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11.6	11.4	11.1	11.2	11.4	11.2	11.2	11.5
귀속된 고용주의 사회기여금	2.5	2.7	2.7	2.6	2.4	2.4	2.4	2.5
•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7.9	8.2	6.0	6.5	6.6	6.5	6.5	6.7
근로자	6.4	6.7	4.9	5.2	5.3	5.2	5.2	5.3
자영업자	1.3	1.2	1.0	1.1	1.1	1.1	1.2	1.3
연금수급자와 기타 개인들	0.2	0.3	0.1	0.2	0.2	0.2	0.1	0.1
- 조세	4.9	6.4	9.1	9.5	9.6	9.7	10.0	10.2
- 기타	1.1	2.1	5.8	5.3	6.5	6.6	7.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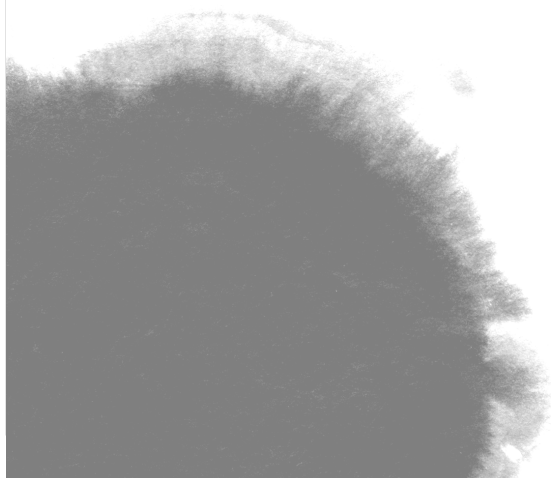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그림 3-5] 프랑스 사회보장재원의 유형별 배분현황(2009)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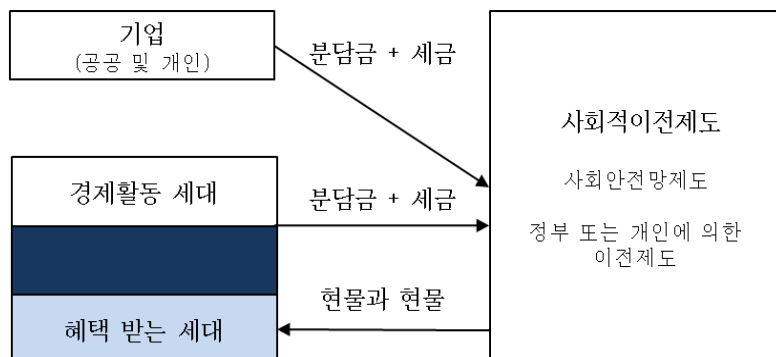
사회보장 자원조달에 관한 논의와 과제

제4장 사회보장 재원조달에 관한 논의와 과제

제1 절 사회보장 재원방안 선택의 고려사항

사회보장 재원방안의 선택시 고려사항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지출의 대상자 그룹과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과 부담, 수혜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부과 대상, 세원 선택, 조세, 사회보험료, 목적세등의 방안과 및 금액에 대한 재원조달원칙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재원조달 방안의 기본이 되는 목적으로는 미래 비용의 현재가치와 초기비용의 합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의 현재가치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들 수 있다. 셋째, 재원조달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4-1] 사회보장지출과 부담의 주체



자료: ILO, Financing Social Expenditures

재원조달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많은 부분 대상자의 규모와 재원조달의 원칙들이다. 재원조달의 원칙으로는 여러 가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의 예로는 재원적 건고성의 원칙(financial solidarity rule), 집합적 재원동질성의 원칙(the rule of collective financial equivalence), 세대간 형평성의 원칙들을 들 수 있다. 재원적 건고성의 원칙(financial solidarity rule)은 납세자의 능력에 준거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집합적 재원동질성의 원칙(the rule of collective financial equivalence)은 민간보험에서 개인, 코호트별 동질성의 원칙과 유사하다. 이는 첫째, 재원적으로 비용의 현재가치가 향후 혜택의 현재가치와 같아야 하며, 둘째, 이러한 장기적 재정균형 상태가 허용되기만 한다면 그 동안 소득의 재분배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은 그렇지 않은 용도의 지출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지출의 규모와 재원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는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외에도 거버넌스 요인이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장지출의 규모에 따른 보험계리적 균형과 재원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표 4-1〉 사회보장지출의 규모와 재원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소득항목에 미치는 영향	지출항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요인		
(1) 성장	피보험자와 임금	수급자와 수혜자의 수
(2) 고용(대부분 의존)	가입자 및 납세자의 수	수혜자의 수(거동불가능, 질병, 실업, 빈곤경감 혜택: 즉시; 나이, 생존 혜택: 장기)
(3)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임금(상당히 의존)	보험수당	급여수준(time lag)
(4) 임금/인플레이션	보험수당	급여수준
(5) 금리의 증가	투자소득	

	소득항목에 미치는 영향	지출항목에 미치는 영향
--	--------------	--------------

인구 요인

(1) 초기 인구 연령구조	참여자의 수	수혜자의 수
(2) 사망률 변화	참여자의 수	서비스 평균 기간과 수혜자의 수
(3) 출산율 증가	경제 개발일 경우 가입자의 수(장기간)	수혜자의 수(장기)

거버넌스 요인

(1) 제도 설계	분담금이나 세금 조항	급여산정방식, 급여수준에 대한 자격조건
(2) 유지(제도의 주요 변수 조정)	보험수당 상한	급여수준
(3) 행정적 용이성		행정적 총지출
(4) 등록 준수	보험수당 총금액(단기)	(장기)수혜자의 수, 급여수준
(5) 임금 준수	보험수당(단기)	(잠재적 장기) 급여수준

자료: ILO, Financing Social Expenditures

재원조달방안으로 크게는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투자수익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다. 국가마다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사회경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사회보장재원의 선택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파나마에서는 주세로 사회보장재원을 조달하고, 볼리비아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로 DC시스템의 재원을 조달하였다. Bose 외(2007)은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재원조달 방식이 다름을 보였다. 즉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는 조세를 기반으로 한 재원조달방식 통화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조세(seigniorage)보다 더 적절하지만, 국민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는 조세방식의 재원조달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조세로 재원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PAYG 방식으로 재원조달된다. 이원적 연금제도는 대부분 기여방식, 완전적립식으로 재원조달된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unfunded방식으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에서는 사적연금의 경우 완전 적립방

식이 아니다. 단기적인 현금급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PAYG 방식으로 재원조달된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기여금으로 재원조달되는 급여와 자산 조사를 통한 공공부조적 성격급여를 조세로 재원조달하는 이중 체계로 구성되기도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적기금과 일반국고 혹은 지방세의 혼합형태로 재원조달한다.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조달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메디케이드 하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 간에 걸친 서비스공급을 요하므로 연금과 같은 재원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택한 재원조달방안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 대안보다 현재 선택한 재원방안이 채택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재원방안의 형평성, 급여수준과 자격기준, 경제적 효용과 효과, 세대간 형평성, 사회부문에서 재원배분의 전반적인 효율성, 전반적인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표 4-2〉 사회보장재원 유형과 거버넌스

	정부	공공부문	민간부문
세금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NHS방식(영국, 영연방국가들), 공공의료서비스(스칸디나비아 국가들), NHI방식(캐나다 등) (3) 연금: 덴마크(일원구조),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공공부조)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3) 연금: 스웨덴(basic pension guarantee)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3) 연금: 공무원연금(미국)
보험료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3) 연금(미국, 캐나다,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연금-라틴아메리카(멕시코 등)의 모든 사회보험형 의료서비스, 유럽(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의 의료서비스와 연금, 아시아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강제적 민간보험(스위스) (3) 연금: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강제적, 이원형), 칠레(강제 저축의 성격)

	정부	공공부문	민간부문
		(태국)의 의료서비스, 프랑스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보험형 의료서비스와 연금, 아시아(중국)의 연금, 스웨덴의 basic pension gurantee	
민간부문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3) 연금: 몇몇 선택형 이원형 공무원 연금 제도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선택적 혜택이 가능한 일부 사회보험제도 (3) 연금: 선택적 혜택이 가능한 일부 사회보험	(1) 공공부조 (2) 의료서비스: 민간보험(미국, 카리브 국가들) (3) 연금: 독일, 프랑스(이원형)

자료: ILO, Financing Social Expenditures

〈표 4-3〉 자원조달 유형별 특징과 효과

	분담금	일반 세수	목적세
인구 범위	(1) 전체 인구를 포함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나(집단 전체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 (2) 저소득층의 원치 않는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	일반적인 보험에 적합	일반적인 보험에 적합하나 일부 인구 범위에 사용이 가능(만약 세금이 붙는다면 농업소득, 비료 등에서 볼 수 있는 농업연금을 예로 들 수 있음.)
관리	일반적인 수익보다 수집에 더 많은 비용이 듦.	관리가 쉬우며 추가 비용도 없음.	분담금의 경우보다 쉬우나 일반적인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듦.
규제	신뢰와 수익에 관련하여 혜택이 좋을 경우 높다고 생각됨.	일반적 세금 징수가 높은 만큼 따라서 분담금보다 낮게 하는 것이 가능함.	일반적인 수익과 같음.
혜택 디자인	(1) 혜택 수준과 분담금 지불이 서로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소득에 따른 혜택이 적당하다고 생각됨 (2) 실제 DC제도에 대한 유일한 방법임.	일반적으로 일률적 혜택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수익과 같음. 그러나 목적소득세인 경우에는 수익과 관련된 이득에 대한 분담금으로 적절할 수 있음.
소득 정책에 대한 고려	(1) 대상 그룹에(연대금융원칙) 지불 능력에 따라 자금을 허용함 (2) 또한 그들 소득 범위 중 고소득자나 단체는 제외할 수 있음.	사회보장을 더욱 진보적으로 만들 수 있음.	분담금 중 (1)과 근본적으로 동일함.
재정	(1) 연금을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부 결정에 상관없이 예산 독립적으로 공적 자금을 할당할 수 있음. (2) 균형 재정의 유지는 장기적	(1)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소득을 신경쓰지 않으며 연간 예산의 결정에 따름. 그 결과 분담금보다 신뢰할 수 있음.	분담금 조합(목적), 세금(정부 관리), 입법 조항에 따른 실시, 재정 거버넌스 실행(간접 혹은 비간접): 이론적으로 보유금을 축적

	분담금	일반 세수	목적세
	이익 수준을 위해 명확한 선택을 요구함. (3) 옵션에 따라 유연하게 보유할 수 있음(따라서 보조적인 경제정책 추구).	(2) 공공부문 금융을 통해 정부통제가 보다 유연함. (3) 일반적으로 현금 지불 형식임.	가능하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노동시장에서 노동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2) 거시경제적 수준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변화	(1)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2) 분담금(2)와 동일	일반 과세와 동일함.
정부	일반적으로 두 세계로 나뉘어진 정부 조직이거나 독립적인 방식이 적합함.	일반적으로 정부 부서에 의해 운영방식이 변함.	독립적이거나 정부 운영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자료: ILO, Financing Social Expenditures

제2절 복지재원조달방안

복지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출측면에서의 조정과 세입확충, 국채발행, 사회보험료 인상, 민간부문의 활용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세출측면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고, 국채발행도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관리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보다 근원적으로 세입확충 방안을 주된 축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세출측면의 조정은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으로 세입확충에 앞서서 재원조달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조세체제의 구조조정,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세율인상, 세원확대 및 세제신설 등의 세제개편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세입확충시에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하에 재원확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부문에서는 소득재분배적인 기능보다는 세수확충과 경제적 영향부문에 포커스를 맞추고, 소득재분배적인 기능은 지출측면에서 심분 발휘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세수확충을 위한 재원방안의 선택시 추가적 재원의 부담주체가 노동

임금자, 자산소득자, 고용주, 법인, 특정소비자등 어느 계층이 되어야 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재원조달 책임주체도 중앙정부가 되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조세감면제도는 세제감면을 통한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보조금의 경우보다 그 규모와 대상의 파악이 어렵다. 세제감면을 통한 보조는 직접적인 보조금보다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등 집행과 시행에 있어 용이함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제도는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한시적으로 일몰기한을 두고 시행되었다가도 이후 폐지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그 규모도 매년 팔목할 만하게 증가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다. 2009년도 총 조세감면액 규모는 28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세감면제도 중 특히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크게 형성된 제도는 <표 4-4>와 같다. 임시투자세액공제(1조 9,188억원, 2009년)는 불황기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었으나 상시화 된 것으로 정비 필요성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85억원, 2009),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35억원, 2009), 주식 현물출자 및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245억원, 2009),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21억원, 2009),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9억원, 2009)등도 지원의 명분이 빈약하므로 정비 필요성 있다.

〈표 4-4〉 폐지·축소가 필요한 조세지원

(단위: 억원)

항목	2009년(전망)
임시투자세액공제	19,188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85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35
주식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자회사 설립 시 과세특례	24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21
의약품 품질 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9
합계	20,29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2. 소득세

우리나라의 소득세수의 GDP탄력성은 1.3(2000~2009년) 정도로, GDP 증가율 이상으로 세입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관계로 최고 과표구간 신설 없이도 세수확보 여건은 좋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표구간 조정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GDP 상승에 따른 세수가 증대할 여지가 많다. 소득세 최고세율 2%p 인하를 유예하고 과세표준 1.5억원 이상 구간에 대한 40% 세율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약 1조 4천억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안종석 외, 2010; 국회예산정책처, 2010).

소득세부문에서는 세율인상에 앞서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현실화등 과표 양성화 노력을 통하여 넓은 세원에 의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음성탈루소득의 적발을 통한 세원확대 및 세입증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을 노출시키는 방안 적극 추진한다. 소득세의 역진성을 강화하는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보조금 지원을 지양하여 세수 감소방지가 필요하다.

〈표 4-5〉 최고세율 세수효과(2008년 기준)

(단위: 명, 십억원)

		납세자수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준	세율 인하시	인하 폭
2% 인하	종합소득세	126,714	30,999	7,891	7,540	351
	근로소득세	79,718	14,799	3,947	3,795	152
	합계	206,432	45,798	11,839	11,335	504
1.5억원 이상 40%	종합소득세	70,610	24,246	6,458	7,057	599
	근로소득세	37,341	9,994	2,863	3,080	216
	합계	107,951	34,241	9,321	10,136	816

자료: 안중석 외, 2010

3. 자본소득세

가.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 미등록 주식에 대한 과세와 법인이 보유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및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신 거래세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면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이도 주식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성숙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비과세혜택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것에 대체로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며, 종합 과세하는 경우도 많고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

과 손익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도 거래세부와 체제에서 점진적으로 소득세부과로 전환하여 성공한 케이스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거래세 부과체제에서 상장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과세기반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투기적인 주식투자 방지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009년도 시가총액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대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분리과세하고 이자소득세율인 14%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적 세수입은 약 19조원으로 추정된다(홍범교외, 2010). 이는 2009년의 증권거래세수 3조 5,339억 원에 비하여 약 15.5조원 높은 세수를 의미한다.

나. 파생금융상품 과세

우리나라는 1996년 최초로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육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선물 및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시장도 세계적인 거래량을 기록할 만큼 성장한 시점이며, 현물시장과 연계한 투자전략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도입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차선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부터 신설하는 방안을 통하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동시에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서는 선물은 약정금액을, 옵션은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세율 0.01% 및 탄력세율 0%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4.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인 18.1% (201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중에서는 캐나다(7%)와 일본(5%)만이 우리나라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다.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역진적인 세금을 거두어 사회복지지출을 한다는 것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통한 추가 재원조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역진성문제는 세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강화로 상쇄하고, 서민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은 영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많은 경우 극복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은 낮으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비중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고, 또 현재처럼 물가상승이 가속화되어 가계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앞서 현행 부가가치세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기반을 넓혀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선행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과도한 면세 적용은 이후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안중석 외(2010)에서는 금융보험, 의료보건,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4-6〉 주요 면세업종의 특성 및 과세 전환의 세수변화

(단위: 십억원, 2003년 기준)

면세업종	매출액	부가 가치	중간수요	총소비	매출액 비중 ¹⁾	부가가치 비중 ²⁾	부가 가치율	과세전환의 세수변화
농산물	22,204	16,521	16,090	10,091	0.0127	0.0215	0.7440	800.48
축산물	8,930	2,123	7,982	730	0.0051	0.0028	0.2377	-50.13
수산물	4,771	2,125	3,257	1,931	0.027	0.0028	0.4453	147.49
미가공식료품(농산)	12,715	1,257	5,964	6,733	0.0073	0.0016	0.0988	111.86
미가공식료품(축산)	6,825	578	5,335	4,392	0.0039	0.0008	0.0848	209.66
미가공식료품(수산)	3,546	490	1,429	2,800	0.0020	0.0006	0.1382	308.62
은행예금	26,944	21,594	19,853	7,215	0.0154	0.0282	0.8015	-83.60
비은행예금	7,668	4,751	5,302	2,385	0.0044	0.0062	0.6196	-104.42
기타 금융중개	11,699	8,129	8,433	3,295	0.0067	0.0106	0.6948	-249.94
관련서비스	9,299	6,717	6,562	1,776	0.0053	0.0088	0.7224	-108.50
생명보험	13,233	7,740	82	11,709	0.0076	0.0101	0.5849	1,157.86
손해보험	11,606	3,915	5,367	2,619	0.0066	0.0051	0.3373	-145.88
의료보건(국공립)	1,267	765	89	247	0.0007	0.0010	0.6038	20.93
의료보건(비영리)	8,029	4,470	204	7,827	0.0046	0.0058	0.5567	765.19
의료보건(산업)	27,336	13,305	1,178	26,148	0.0156	0.0173	0.4867	2,495.65
위생(국공립)	1,837	942	407	585	0.0011	0.0012	0.5130	33.34
위생(사립)	3,295	2,259	2,955	321	0.0019	0.0029	0.6854	-174.89q
청소소독	3,732	2,702	2,944	765	0.0021	0.0035	0.7240	-127.49
교육(국공립)	24,060	19,760	0	4,890	0.0138	0.0258	0.8213	534.08
교육(사립)	15,735	13,405	0	16,662	0.0090	0.0175	0.859	1,760.75
교육(산업)	8,234	5,227	1,007	7,293	0.0047	0.0068	0.6349	654.91
철도여객운송	2,419	1,267	962	1,515	0.0014	0.0017	0.5240	94.50
철도화물운송	347	106	337	4	0.0002	0.0001	0.3067	-9.81
도로여객운송	14,049	7,759	3,217	10,716	0.0080	0.0101	0.552	925.19
연안·내륙수상운송	1,039	366	852	176	0.0006	0.0005	0.3520	-30.24
외항운송	11,239	1,148	3	72	0.0064	0.0015	0.1021	8.59
신문	2,947	757	2,397	555	0.0017	0.0010	0.2571	-163.80
출판	5,090	1,659	2,689	2,608	0.0029	0.0022	0.3258	100.03
기타매체	448	116	343	107	0.0003	0.0002	0.2594	11.94
우편	3,307	2,222	3,507	128	0.0019	0.0029	0.6719	-128.48
지상파방송	3,140	1,529	2,880	341	0.0018	0.0020	0.4869	-202.53
유선방송	1,887	624	1,169	720	0.0011	0.0008	0.3307	-65.60
문화서비스(국공립)	1,497	819	262	770	0.0009	0.0011	0.5469	120.90
문화서비스(기타)	296	129	44	316	0.0002	0.0002	0.4349	38.16
주택소유	53,906	40,427	0	54,339	0.0308	0.0527	0.7500	5,517.41
임대	230	175	393	0	0.0001	0.0002	0.7590	16.57
위생종이	1,336	330	472	550	0.0008	0.0004	0.2472	20.89
무연탄	226	93	494	0	0.0001	0.0001	0.4122	21.29
연탄	448	116	37	29	0.0003	0.0002	0.2594	1.06
원업	55	36	109	38	0.0000	0.0000	0.6616	1.40

주: 1) 전 산업 매출액 대비 해당업종 매출액 비중

2) GDP 대비 해당업종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율

자료: 안종석 외, 2010

5. 탄소세의 신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의 일종으로 에너지사용에 관한 탄소세를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경제적비용을 내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에너지부문과 전력 부문을 합하여 연간 약 20조 4928억 원(200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2008~2012년 유럽시장의 평균 탄소배출권 가격을 톤당 25유로인 것으로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탄소세의 예상세수는 GDP의 약 1%로 추정된다(김승래 외, 2009).

유럽국가들의 경우 신규 환경세의 도입시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인하하는 등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에서 환경세로 세부담이 이동된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천연가스 및 아황산가스에 대한 신규과세와 더불어 사회보장기여금의 축소 등이 있었다. 독일도 에너지세 부과 후 고용주와 종업원연금 부담금의 1.7%정도가 감소(2003년)하였다. 네덜란드도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과세와 함께 증가한 세수로 인하여 고용주 사회보장기금의 부담이 0.19% 감소되었다(1996년). 영국도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후 세수는 고용주국민보험기여금을 0.3% 줄이는데 사용(2001년)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비추어 보아, 또 유류세, 교통세, 환경부담금 등의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외의 탄소세를 신설 후, 점진적인 에너지세제의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적 재원을 사회보험료나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6. 담배, 청량음료, 도박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강화

가. 담배에 대한 과세강화

흡연은 비정상재(demerit good)로서, 흡연율을 저감하기 위하여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자에게 흡연의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조 8,358억 원(2001년)으로 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해외국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표 4-7〉 담배값의 국제비교(2007년 2월)

국가	소매가격	종량세	종가세 ²⁾	부가가치세	총세금	세금/가격
오스트리아	2.36	0.33	1.01	0.39	1.73	73.6%
벨기에	2.69	0.22	1.41	0.47	2.09	77.7%
불가리아	0.90	0.10	0.43	0.15	2.09	76.2%
시프러스	1.92	0.28	0.86	0.25	1.39	72.1%
체코	1.08	0.36	0.27	0.17	0.80	74.2%
덴마크	2.85	1.15	0.39	0.57	2.11	74.0%
에스토니아	0.84	0.24	0.22	0.13	0.58	69.5%
핀란드	2.76	0.20	1.38	0.50	2.08	75.4%
프랑스	3.37	0.20	1.95	0.55	2.71	80.4%
독일	3.17	1.11	0.80	0.51	2.42	76.4%
그리스	1.89	0.07	1.02	0.30	0.39	73.5%
헝가리	1.26	0.39	0.35	0.21	0.94	75.0%
아일랜드	4.75	2.04	0.84	0.82	3.71	78.1%
이탈리아	2.22	0.08	1.22	0.37	1.67	75.1%
라트비아	0.42	0.16	0.08	0.07	0.31	72.6%
리투아니아	0.73	0.19	0.11	0.11	0.41	55.6%
룩셈부르크	2.05	0.21	0.97	0.27	1.45	70.6%
말타	2.43	0.23	1.25	0.37	1.85	76.1%

국가	소매가격	종량세	종가세 ²⁾	부가가치세	총세금	세금/가격
네덜란드	2.69	0.98	0.55	0.43	1.97	73.0%
폴란드	0.99	0.26	0.31	0.18	0.75	76.2%
포르투갈	2.02	0.79	0.47	0.35	1.60	79.2%
루마니아	0.88	0.23	0.25	0.14	0.63	71.4%
슬로바키아	1.61	0.43	0.37	0.26	1.06	65.8%
슬로베니아	1.35	0.20	0.59	0.22	1.01	75.2%
스페인	1.62	0.11	0.92	0.22	1.26	77.6%
스웨덴	3.28	0.42	1.29	0.66	2.36	71.9%
영국	5.23	2.10	1.15	0.78	4.03	77.1%
한국 ¹⁾	1.42	0.76	-	0.13	0.89	62.7%

주: 1) 일반적인 담배의 소매가격인 2,500원에 £1당 1,759원의 환율을 적용한 수치

2)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영국담배제조협회(<http://the-tma.org.uk>), "EU Cigarette Price and Tax Breakdown", 2007.

강은정 외, 2009에서 재인용.

전체 담배가격에서 담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는 62%로, OECD평균(7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1년). 현재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이에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이 부가되는 구조이다. 담배는 흡연을 저감, 추가적 세원마련의 용이성등으로 인해 가격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과 저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죄악세라는 이름에 대한 반론등으로 인해 인상시도가 한때 좌절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도 흡연율저감을 위한 담배가격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4-8〉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01 이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안	연평균 증가율
445	5,109	7,020	8,064	13,185	15,143	15,025	15,721	15,788	16,355	16,355	16,355	38.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운용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업무참고자료」.

〈표 4-9〉 담배소비세 현황

(단위, 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25,086	22,378	23,847	27,223	24,479	27,027	27,610	29,204	30,107	28,748	1.5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2011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되었을 당시 마련된 추가적 재원은 부가세 41원, 유통마진 50원을 제외한 409원을 건강증진기금과 지방세에 50:50으로 배분하였다. 건강증진기금에 204원, 담배소비세에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연엽초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을 배분하였다. 향후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된다고 할 때, 2004년 담배가격 인상시의 재원 배분과 같은 비율로 추가재원을 배분한다면,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5,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영외, 2007).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등 지방세에서의 총 세수도 총 5,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 부가가치세 1105억 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되어 총 세수 증가액은 약 1조2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나.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복권등 사행산업 관련세 강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등 사행산업 매출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매출은 증가하여 2010년 총매출액은 16조 6천억원에 달하였다. 1997년 4조원이던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4배나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행산업은 중독성이 있어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를 추구하다가도 이후에는 자신의 소비를 후회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를 통하여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0〉 사행산업매출액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매출액	62,761	89,336	126,516	142,355	123,927	118,888	121,320	145,815	160,014	165,337	173,270	11.9
순매출액	21,149	31,849	39,356	36,026	51,489	49,880	51,167	60,469	66,151	68,112	73,629	14.8

자료: 사행산업통계정보포털

경마, 경정, 경륜등에는 마권매출과 관련하여 레저세가 10% 부과되고 이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가되며, 경마 및 경정경륜장 입장권 매출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각각 1인당 500원 및 200원 부과되고 이에 대하여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형태이다. 카지노에 대하여는 장소별 개별소비세 50,000이 부과되면, 폐광지역 내국인은 3,500원 외국인은 면세이다.

경마의 수익금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일부 쓰이며, 경륜, 경정의 수익금은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방재정지원에 일부 쓰인다.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폐광지역개발 기금으로 가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0%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인다. 스포츠 토토의 경우 수익금의 일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된다. 복권의 경우 수익금의 30%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등 법정배분사업의 수입원이 되고, 70%가 국민주택기금등 공익사업의 재원이 되고 있다.

[그림 4-2] 사행산업별 매출 및 지출구조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 토토
환급금 (73%)	환급금(72%)	전체 환급금 (드롭액의 82~83%) 머신게임배당률 (92~93%)	환급금 (50~60%)	환급금 (50~70%)
제세(16%) -레저세(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제세(16%)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 (2%)	페랑지역개발기금, 사업비 (16~17%)	사업 운영비 (10% 가량)	사업운영비 (19% 가량)
수득금 (11%)	수득금 (12%)	법인세(10%)	수익금 (38~39%)	수익금 (15~30%)
경주개최 비용	경주 개최 비용	관광진흥 개발기금 (10%)	↓	↓
수익금	수익금	수익금 (27~28% 내외)	↓	↓
↓	↓	↓	↓	↓
이익준비금 (10%)	체육진흥기금 (40%)	배당금 (43~45% 가량)	법정 배분금 사업 (30%)	국민체육 진흥기금출연 (80%)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30%)	청소년육성기금 (30%)	↓	↓	↓
축산발전 기금 (48%)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7.5%)	↓	↓	↓
농어촌복지 사업 (12%)	지방재정지원 (10%)	사업확장적립금등 (55% 내외)	공익사업 (70%)	대상경기주최 단체지원 (10%)
	공익사업지원 (2.5%)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10%)

주: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2항 1,2,3호에 따라 차등규정, 페랑지역개발기금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0%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

레저세는 현재 지방세로서, 경마, 경륜, 경정을 통틀어 2008년 기준 약 9천 890억원의 규모이며, 60%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간 레저세 징수액을 살펴보면, 2002년 1조 770억원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 8천 643억원, 2008년 9천 89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레저세를 국세화하여 국고로 환수한 후 복지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고려한다. 줄어든 지방재정의 문제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표 4-11〉 레저세 연간 징수액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77,663	895,907	771,921	691,875	687,825	864,332	989,019	1,002,264	1,067,457

자료: 국가통계포털, 지방세징연감

다. 청량음료, 패스트 푸드등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도 최근 서구사회처럼 아동 및 청소년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만과 관련된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8천억원(2005년 기준, 건강보험연구원,2010)으로 추정된다. 청량음료나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강위해식품은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해 비만율과 관련 질환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건강위해식품의 외부성 교정(소비자들의 비만관련 질병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건강위해식품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개 주에서 청량음료, 스낵, 사탕, 시럽 등의 식품에 과세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종가세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으나, 워싱턴주 등 5개주에서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주로 관련 업체들의 반발, 로비 등으로 인하여, 12개의 주에서 일부 식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기도 하였다. 비만 등을 초래하는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과세는 영양학적인 관점에서의 식품분류나 청량음료의 성분에 따른 정의등에 의거하여 해당식품에 부과할 수 있다.

7. 사회보장세의 신설

복지지출과 세입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장세(가칭)라는 목적세를 신설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를 저부담 저복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로의 체제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명시적인 사회보장세의 도입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사회보장세는 여러 형태로 도입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를 국채로 재원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 등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하였다. 외부 불경제 시정등 명분이 있는 적정 세목에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연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박성이 강한 사행산업, 흡연, 알콜중독등의 억제를 위해 외부 불경제품목에 우선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고, 세수규모의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세도 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사행산업, 담배세, 레저세, 주세등의 재원을 일괄적으로 국고로 환원한 후 재원배분을 한다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현행의 사행산업, 담배, 주류 등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의 부가세(surtax)가 부가되어 있는 형태로,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하고, 과세 강화 이후에도 이들 재원을 복지재원이나 기타 재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부가세 구조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현행의 지방교육세와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개선과, 건강증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 및 건강보험 재정운용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반면, 이러한 국고흡수 후 재배분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 등에 어려움을 줄수 있

다는 단점도 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사회보장세를 부가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이는 상위 5%의 고소득자와 상위 1%의 대기업을 상대로 부가하여 매년 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복지재원으로만 충당한다는 골지이다. 그러나 누진세 형식으로 상류층에만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사회보험방식의 활용

가. 사회보험료 인상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사회복지지출 재원조달을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노인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체제의 개선등 노후 건강관리에 관한 재정지출을 건강보험료에 가산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관련 재정지출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어왔다.

나.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복지지출 재원조달을 하자는 논의도 있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재원을 출산장려대책에 활용하여 출산율이 상승하게 되면 미래의 생산인구 증가로 연금 보험료 수입의 증가와 조세기반의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금기금으로 노후대책,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면 은퇴후 연금소득 이외에도 현물서비스가 충실히 지원되므로 노후 생활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노후 빈곤으로 인한 추가적 사회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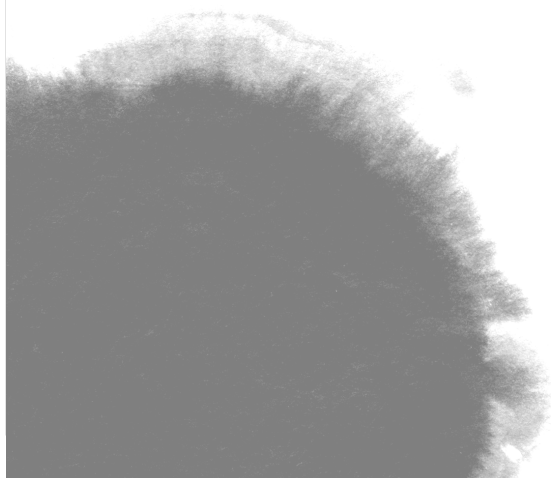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연기금의 여유재원 활용만으로는 추가 복지재원 소요의 충당에 많은 한계가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연기금의 활용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사회보험신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복지논쟁의 근간에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복지수요가 있다. 자녀양육의 공공화를 위한 지출은 현재 시행 예정되고 있는 무상보육확대등의 움직임과 더불어, 향후 사회적 합의여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며, 유럽형 고복지 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관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합의가 현실화 될 때는 관련 제도들을 사회보험형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즉,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보험을 신설하여 출산 및 출산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은 출산 후 휴가기간 및 육아기간 중 아동의 질병이나 보호자의 질병에 의한 휴가기간 동안의 소득상실의 80%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금으로 충당한다. 사회보험신설은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연대형성에 도움이 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부처별, 제도별로 분산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다.

05

결론 및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성장을 담보로 한 적절한 재분배정책은 소득분배의 개선, 빈곤을 완화등을 통한 양극화의 완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선순환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성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성장의 과실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성장과 복지지출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단시간내에 규모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또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체계가 비교적 잘 발전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적 팽창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배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악화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본 지니계수는 1990년에는 약 0.26 선이었던 것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폭 개선의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며 악화추세에 있다.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당시 1999년에는 약 0.29까지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2000년에는 1990년 수준 가까이 회복하였으나 이후 악화추세로 접어들어 2010년에는 외환위기 당시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로 살펴본 분배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0년에는 약 7.1%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때 급증한 이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약 12.5% 수준까지 증

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지출이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상황 개선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문제와 고용시장의 문제등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취약점도 있고, 사회보장 전달 체계상의 비효율성 문제와 복지의존도와 근로의욕 저하등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내재해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적 성격의 복지프로그램은 복지의존도 및 근로의욕저하를 가져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기가 쉽기 때문에, 수급자의 자활노력을 유도하여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수급자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근로에 부정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외에도 수급자가구에게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주택급여등의 혜택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자로 남으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외에도 각종 정부지원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집중되는 공공부조제도의 설계도 빈곤 가구의 탈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차상위층 가구나 근로빈곤층의 경우는 공공부조제도 수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지출의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는 부처간 연계의 부족과 역할의 중첩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처등 여러부처의 사업

과 역할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고용과 복지에 관한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고용과 복지의 유기적 연계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보육사업의 경우도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주관부처가 이동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아동, 청소년 등의 사업영역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부처별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부처간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 복지부의 보육 및 아동에 대한 지원과 중복적인 성격의 교육부 사업들도 종종 있어왔다. 주택관련 지출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서인 관계로 저소득층에 관한 주택지원, 바우처등의 사업까지 포괄함에 따라 과거 자산조사기준부터 새로운 기준에서 시작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렇듯 부처간 역할이 중첩되는 분야에서는 사업의 중복과, 역할정립의 불명확성에 따른 필요사업의 추진력 부족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보장지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지출이 양극화 해소, 빈곤율 감소등 분배상황의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분배지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의 효과성은 그다지 고무적이지는 않다. 사회보장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공공부조제도가 복지의존도를 높이거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현재의 통합급여형태를 개별급여로 전환하여 탈수급유인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격과 더불어 의료, 교육, 주거등의 혜택이 동시에 패키지로 주어지지 않도록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등의 현물급여는 의료와 교육에 대한 수혜자격을 따로 마련하는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에 각종 정부지원이 몰리는 중복적인 제도도입을 지양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강화등을 통한 중복수혜등의 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부처간 역할이 중첩되는 사업영역에 관한 역할조정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자활사업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정립과 유기적인 연계는 노동과 복지의 연계라는 주요과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부처에 따라 상이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연관사업들은 보다 통일된 정책목표하에 통일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다 명료하고 단순한 사회보장정책목표하에 사업과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다. 예산절차에 있어서도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과 강화를 통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사이클을 작동시킬 수 있는 복지지출 강화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투자방향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과 복지의 연계, 일자리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효율화를 위한 투자 강화 등 복지 포폴리즘적 요소를 배제한 복지수요의 반영에 따라 재정투자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무적 집행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나 재원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것에서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성과주의 예산 정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총재정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부문의 규모가 작은 상태이지만, 빠른 고령화속도와 저출산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전환을 의미하는 현상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증가 및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보육지원의 확대 및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강화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재원조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복지재원의 활용에 관한 해외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에 있어서 사회안전망 확충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면서 복지제도의 변화와 재원믹스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재정운용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급여의 증가는 추가적 부담을 의미하며, 한국적 복지모형과 부담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재정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부담에 대한 단기적 재원조달은 현행 제도 내에서의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 노력이 선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 개편, 적합한 세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목적세나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고려, 민간의 역할강화, 고용주 기여확대를 통한 신규재원확보 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재원확충과 관련하여서는 단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부담률의 인상을 논하기전에, 전달체계의 개선, 부처간 역할의 조정 등을 통한 지출의 효율화와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추가적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및 축소를 통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목적세와 부담금등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과 지방세와 국세 항목의 구조조정 등 재정운용상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담배, 주류, 경마, 복권 등의 대표적 외부불경제 품목들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담금, 지방세, 목적세의 형태로 하나의 세원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세금들이 부가되고 있고, 주로 특별회계나 기금 등의 재원이 되거나 지방세로 활용되고 있어, 목적세 형태임

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그다지 투명하지 않고, 세수의 활용측면에서 경직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세제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부처간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에 대하여서는 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금 등의 재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금, 특별회계 등의 재원과 목적세 부담금 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 도모와 추가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재정추계. 국민연금운
영개선위원회.
- 권순만, 박건희(2006). 노인 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 제도의 유형과 정
책과제,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15,
9-36.
- 김용하, 석재은, 신종각 외(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모형 개발
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김진수(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일수, 이동현(201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국민건강보험공
단 정책연구원.
- 박형수, 전병목(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영석(2011).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
래 전략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 신화연(201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병목, 이은경(2010).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최인덕, 현경래, 이호용, 이은미(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
운용전망과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05).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2004). 복지재정지출 연건변화와 전망.

한국조세연구원(2011).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2011).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

한국조세연구원(2011).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

한국조세연구원(2011).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

한국조세연구원(2011).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

Alberto Alesina and Paola Giuliano(2009).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ZA Discussion Paper No.4056.

Anthony B. Atkinson and John Micklewright(1991).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29, No.4, pp.1679-1727.

Anthony B. Atkinson(1995a). THE WELFARE STATE AND ECONOMIC PERFORMANCE, National Tax journal, Vo.1. 48, No.2, pp.171-98.

Anthony B. Atkinson(1995b). The Scope for a European Growth Initiative: Welfare State Necessarily an Obstacle to Economic growth?, European Economic Review, Vol.39, pp.723-730.

Assar Lindbeck and Dennis J. Snower(2001). Insiders Versus Outsider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5, No.1, pp.165-188.

Bart Capeau, Andre Decoster, Kris De Swerdt, Kristian Orsini(2008). Welfare Effects of Alternative Financing of Social Security Some Calculations for Belgium.

- Christine Fauvelle-Aymar(1999). The Political and Tax Capacity of Government in Developing Countries, KYKLOS. Vol.52, pp.391-413.
- Douglas J. Besharov(1998). Social Welfare's Twin Dilemmas: Universalism Versus Targeting and Support Versus Dependency.
- Erzo F.P. Luttmer and Monica Singhal(2010). Culture, Context, and the Taste for Redistribution.
- E'tienne Charbonneau(2009). Talking Like a Tax Collector or a Social Guardian? The Use of Administrative Discourse by U.S. State Lottery Agencies.
- Gael Coron and Bruno Palier(). Change in the Means of Financing Social Expenditure in France Since 1945.
- GEOF WOOD and IAN GOUGH(2006). A Comparative Welfare Regime Approach to Global Social Policy, World Development Vol.34, No.10, pp.1696-1712.
- G. Tamburi and P. Mouton(1976). Social Security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 Hannu Uusitalo(1984).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the Welfare State: the State of the Ar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12, pp.403-422.
- James Alm and Benno Torgler(2004). Center for Research in Economics, Management and the Arts, Working paper No.2004-14.
- Jason Powell 1 Jon(Joe) Hendricks(2009). The Welfare State in Post-Industrial Society.
- Joel Slemrod(1998). How Costly is a Large, Redistributive Public

- Sector?,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Vol.5, pp.87-105.
- Kenneth Carling, Per-Anders Edin, Anders Harkman, Bertil Holmlund(1996). Unemployment Duration, Unemployment Benefits, and Labor Market Programs in Swede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59, pp.313-334.
- Lan Gough and Miriam Abu Sharkh(2011). Financing Welfare Regimes: Mapping Heterogeneous Revenue Struc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20, pp.280-291.
- Lan Gough and Miriam Abu Sharkh(2010). Financing Welfare Regimes: Literature Review and Cluster Analysis,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Lawrence Summers, Jonathan Gruber and Rodrigo Vergara(1993). Taxation and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s: The Case of Corporat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Louis M. Imbeau(2009). Do They Walk Like They Talk?, Speech and Action in Policy Processes.
- Mancur Olson, Jr.(1996). Distinguished Lecture on Economics in Government: Big Bills Left on the Sidewalk: Why Some Nations are Rich, and Others Poor,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0, No.2, pp.3-24.
- Michael Craw(2010). Deciding to Provide: Local Decisions on Providing Social Welfar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54, No.4, pp.906 - 920.
- Nicholas Barr(1992). Economic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A Survey and Interpret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30, No.2, pp.741-803.

NILOY BOSE, JILL A. HOLMAN, and KYRIAKOS C. NEANIDIS(2007). The Optimal Public Expenditure Financing Policy: Does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Matter?, Economic Inquiry, Vol.45, No.3, pp.433 - 452.

OECD(2011). OECD's Current Tax Agenda.

OECD Tax Policy Studies(2011). Taxation and Employment, No.21.

OECD Tax Policy Studies(2010). 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 No.20.

OECD Tax Policy Studies(2010). Choosing a Broad Base -. Low Rate Approach to Taxation, No.19.

OECD Tax Policy Studies(2009). Taxation of SMEs, No.18.

OECD Tax Policy Studies(2007). Tax Effec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No.17.

OECD Tax Policy Studies(2007). Encouraging Savings through Tax-preferred accounts, No.15.

OECD Tax Policy Studies(2006).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No.14.

OECD Tax Policy Studies(2005). Taxing Working Families, No.12.

OECD Tax Policy Studies(2005). The Taxation of Employee Stock Options, No.11.

OECD Tax Policy Studies(2005). E-Commerce: Transfer Pricing and Business Profits Taxation, No.10.

OECD Tax Policy Studies(2004). Recent Tax Policy Trends and Reforms in OECD Countries, No.9.

OECD Tax Policy Studies(2003). Using Micro-Data to Assess Average Tax Rates, No.8.

- OECD Tax Policy Studies(2002). Fiscal Design Survey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No.7.
- OECD Tax Policy Studies(2001). Tax and the Econom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OECD Countries, No.6.
- OECD Tax Policy Studies(2001). Tax Ratios: A Critical Survey, No.5.
- OECD Tax Policy Studies(2001). Corporate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No.4.
- OECD Tax Policy Studies(2001). Taxing Insurance Companies, No.3.
- OECD Tax Policy Studies(2000). Tax Burdens: Alternative measures, No.2.
- OECD Tax Policy Studies(1999). Taxing Power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No.1.
- Paul van den Noord, Chistopher Heady(2001). Surveillance of Tax Policies: a Synthesis of Findings in Economic Survey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303.
- Roland Be'nabou and Efe A. Ok(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Roland Be'nabou and Jean Tirole(2006).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distributive Politics, Forthcoming i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Rüdiger Voigt(1989). Financing the German Federal System in the 1980s, Publius, Vol.19, No.4, Federalism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West Germany:A Fortieth

Year Appraisal, pp.99-113.

Thomas Piketty(1996). Social Mobility and Redistributive Politic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 No.3, pp.551-584.
Wolfgang Scholz, Michael Cichon and Krzysztof Hagemejer(2000).
Social Budgeting.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출 및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천사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살바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이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책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재고방안	신영석	미정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미정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
	11-17-4	2011 보건복지 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사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개충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미정
	11-21	탈수급 제고를 위한 기초보장 패널구축: 역동성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패널 구축 및 기초연구	최현수	미정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비발간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미정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 국제비교연구: 정부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복지서비스행정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기층의 복지제해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이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미정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환	미정
11-29	장애인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미정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미정
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미정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미정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근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미정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미정
11-37-1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민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미정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M시 중적연구기반(1)	오영희	미정
11-37-14	고령친화여가 산업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미정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이삼식	미정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미정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생점연구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심포지움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가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미정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미정
	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김미숙	미정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비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미정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미정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화개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원
	10-03	해의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계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계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해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환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임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성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